

2018년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사례집

2018. 12



제1장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소개 및 운영 현황

제2장 2018년 입법컨설팅 우수 조례

제3장 분야별 입법컨설팅 사례



제1장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소개 및 운영 현황	1
1. 도입배경	3
2.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개요	3
3.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업무 처리 절차	5
제2장 2018년 입법컨설팅 우수 조례	11
1. 태백시 웰니스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
2.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35
3.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47
제3장 분야별 입법컨설팅 사례	77
1. 보건·복지 분야	79
가. ○○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81
나. ○○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94
다. ○○군 청년 지원 조례안	105
라.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122
마. ○○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0
바.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162



사. ○○시 △△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71
아. ○○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78
 2. 국토·도로·환경 분야	231
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3
나. ○○시 △△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90
다. ○○시 △△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298
 3. 재정·경제·산업·교육·농림 분야	307
가. ○○시 △△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309
나. ○○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15
다. ○○시 △△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21
라. ○○군 교복 지원 조례안	326
마. ○○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4
 4. 조직·공무원 분야	351
가. ○○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3
나. ○○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83

2018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제1장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소개 및 운영현황



제1장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소개 및 운영 현황

1 도입 배경

- 자치법규 입법·해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는 그동안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법령 제·개정 사항 통보” 등의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 인력과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자치법규 입법·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법·심사에 대한 사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 이에, 법제처의 법령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법제부서에 자치법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법제 인력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도입

2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개요

가. 개념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 제정안 또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하면, 법제처는 이에 대한 법리적·법제적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자치법규 입법 및 심사에 활용하는 제도
 - 자치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 검토의견에 구속되지 않도록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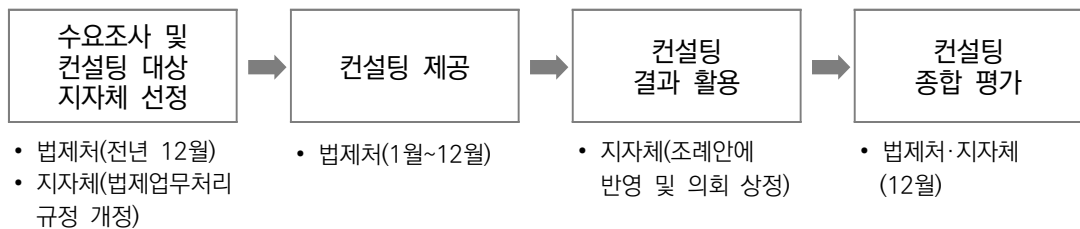
* 입법컨설팅 주요내용

- ①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② 신설되는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③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④ 다른 조례와의 충돌·모순 여부, ⑤ 조문의 위치·순서 등 체계, ⑥ 용어와 표현의 적절성, ⑦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⑧ 적절한 부칙을 두었는지 등

나. 지원 체계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자치입법권을 존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근거로 지원
 -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일정 기간(1년 또는 2년간) 지원
 - 연말에 컨설팅 졸업 여부를 평가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정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원 체계|



다. 법적 근거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①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에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 추진 실적

○ 2018년 총 182건 등록·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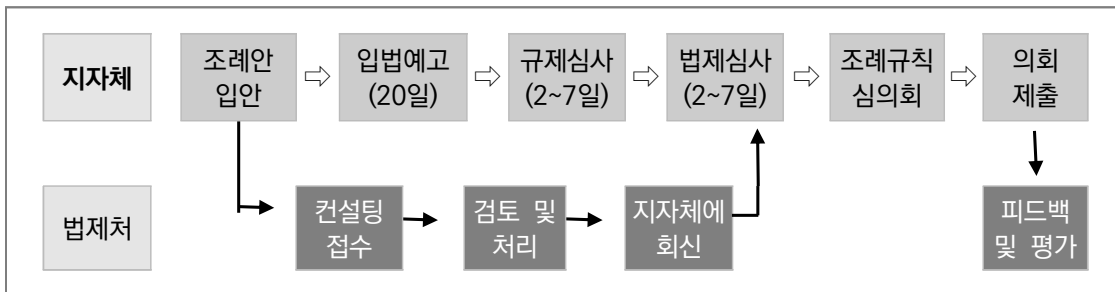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등록·처리건수	65건	107건	172건	182건
전년대비 증가건수		42건	65건	10건
전년대비 증가율		64.6%	60.7%	5.8%

- 2018년 입법컨설팅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제도 전반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전체 응답자 중 만족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90.67%('17년 90.3%)

3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업무 처리 절차

가. 업무 절차도



나. 업무의 절차 및 방법

1) 수요조사

- 법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인력 규모가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실시

2)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

- 지원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 적극성, 대표성, 파급성, 이전 년도 탈락 여부, 지역적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

3) 입법컨설팅 대상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로 한정하며, 지방의회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자치입법권을 존중하여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 현재까지,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위하여 자치법규안 중 조례 제정안과 전부 개정안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컨설팅 인력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컨설팅 대상에 포함 검토

4) 입법컨설팅 제도 근거 마련(지방자치단체 내부 규정 개정)

- 자치입법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규정(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개정 필요
- 입법컨설팅 제도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원 실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근거 예시

• 「00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규칙)

제10조(입법안 심사·방법 및 평가) ①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기획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형식심사

- 가. 구비서류
- 나. 소관사항(법령·조례 또는 규칙) 여부
- 다. 예산확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여부
- 라.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 마.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여부
- 바. 관련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전 승인 또는 협의 이행여부

2. (생략)

3. 다음 각 목에 따른 본심사

- 가. 조문의 축조상태
- 나.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불일치되는 사항의 수정·삭제 및 대안의 준비
- 다. 자치법규 등 입법상의 모든 원칙(기준)에의 적합성
- 라. 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최종 마무리

② 기획법무실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4.22>

5)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안건의 신청 및 처리

가) 안건의 신청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이 입안 또는 입법예고되면 공문(온나라)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원팀’에 컨설팅 요청

※ 입법컨설팅(법제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에 회원 가입

- 법제처에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하여 안건 등록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된 안건의 접수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

안전 등록(접수) 화면

정부정책의 실현을 지원하는
정부입법 지원센터

메시지 4 | 결제 | 로그아웃 | 김영오

정부입법
법령해석
의원입법 지원
자치입법 지원
법제지식
법제교육
도움말

• 의견제시 요청/검토 • 입법컨설팅 • 통합검색 • 지원 사례 • 정부법령안 의견제출 • 입법 통합모니터링 • 입안 심사 • 질의답변/FAQ • 자치입법 지원소개

자치법규 검토
 (의견제시 요청/검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안전검토 및 회신
- 안전검토현황 22
- 결재현황
- 완료현황

접수/배정

- 자료실(현황/통계)
- 안전검토현황/통계
- 기간별현황/통계
- 안전미결현황
- 입법컨설팅 자료실

통합검색

자치법규 지원 사례

정부법령안 의견제출

(국회/정부)입법 통합 모니터링

조례규칙 입안·심사

질의답변/FAQ

자치입법 지원 소개

대 화 창

접수자 정보

[온나라 요청접수](#)
[저장](#)
[목록](#)

• 담당과 자치법규입안지원팀 접수자 김영오

요청자 정보

자치단체명 *				부서명			
요청자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요청일자	2018. 12. 12.		검색
법무담당부서 *		실무자 *		전화번호 *			검색

조례담당자 정보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	--	------	--	------	--

관련공문

제목			
문서번호		보낸일자	
문서본문	열어보기		
첨부파일	열어보기		

입법컨설팅 요청 내용

자치법규명 *							
법령종류	선택	제개정구분	선택	입안단계	선택		
분야	선택	요청분야	선택	표준조례 유무	선택		
입법예고 기간			심의회 상정예정일			공포예정일자	
긴급여부	☐ 긴급 ☒ 일반						
근거법령	조문번호 법령검색						
자치법규명	열어보기						
참고자료	판례	열어보기					
	법령해석례	열어보기					
	의견제시사례	열어보기					
	기타(표준조례 등)	열어보기					

나) 안전의 검토

- 컨설팅 안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전에 회신되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안전 검토기한 준수가 필요
- 검토의견서는 일정한 서식(제정안의 경우 3단 비교표, 전부개정안의 경우 4단 비교표)에 따라 작성
- 조례안의 내용이 복잡하고 중요도가 높은 안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담당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컨설팅도 가능

다) 안전의 회신

- 법제처는 검토의견서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온나라) 회신
- 지방자치단체는 검토의견서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자체 심사 실시

| 입법컨설팅 결과 등재 화면 |

■ 검토정보					
안건명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안건번호	16-0012	접수일자	2016. 3. 17.		
검토기관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검토자 *	윤일준	배정일자 *
전화번호	044-200-6755	팩스번호		배정주소	2016. 3. 17.
검토의견서 *	상하보기 작성 자동작성 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상하보기				
검토의견설명					
검색키워드	검색키워드				
					저장 삭제

| 입법컨설팅 결과 회신 화면 |

■ 검토정보					
안건명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안건번호	16-0012	접수일자	2016. 3. 17.		
검토기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검토자	윤일준	배정일자
전화번호	044-200-6755	팩스번호		배정주소	2016. 3. 17.
검토의견서	상하보기 작성 자동작성 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상하보기				
검토의견설명					
검색키워드	검색키워드				
					검토 회신 목록

라) 지방자치단체의 피드백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되면 입법컨설팅 결과 반영사항을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반드시 등재하여 피드백하고, 법제처는 이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개선방안 등을 모색

| 입법컨설팅 결과 반영 화면 |

입법컨설팅 결과 반영

입법추진현황	공포		추진일자	2018. 8. 1.	
법령종류	조례	공포번호	제1584호	공포일자	2018. 8. 1.
컨설팅결과 반영정도 *	☒ 전부반영 ☐ 일부반영 ☐ 미반영 ☐ 입법진행				
조례규칙안 *	찾아보기 (1584)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hwp				
첨부파일	찾아보기				
일부반영 및 미반영사유 등					

목록

2018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제2장

2018년 입법컨설팅 우수 조례



1. 태백시 웰니스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요 청 기 관 : 태백시 기획감사실

조례안 종류 : 자치조례, 제정안

조례안 접수일 / 조례 공포일 : 2018. 4. 11. / 2018. 9. 28.

■ 입법컨설팅 검토안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태백시 웰니스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 <u>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u>	○ 웰니스는 외국어이므로 조례 제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함 - 국립국어원에서는 '웰니스 제품'을 '건강 관리 제품'으로 순화한 바가 있음 - 따라서, "웰니스"를 "건강관리" 등 다른 우리말로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함. 이하에서는 "건강관리"로 수정하여 검토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라 웰니스 향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직접적인 위임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의 형식으로 목적규정을 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u>향노화</u> "란 노화와 관련된 습관, 증상, 질환을 적극적으로 진단·예방·관리·치	○ (원안 제1호 및 제3호) 웰니스 용어를 이하 검토안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삭제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1. “웰니스”란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사회적, 지적 영역에서 최적의 상태를 추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건강하고 활기찬 활동을 위한 인간의 상태와 행위, 노력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2. “항노화”란 노화와 관련된 습관, 증상, 질환을 적극적으로 진단·예방·관리·치료하여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과 노화현상을 지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웰니스산업”이란 적극적인 건강증진과 예방 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을 생산, 유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항노화산업”이란 항노화에 필요한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융·복합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백두대간 아고산대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웰니스 항노화산업이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u>료하여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과 노화현상을 지연시키는 것을 말한다.</u>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백두대간 아고산대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이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함 ○ (원안 제2호) “항노화”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원안 제4호) 항노화 용어를 정의하였으므로 항노화 산업은 별도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항노화와 관련된 산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정의규정은 규정실익이 없어 삭제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u>항노화산업</u>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u>없으면</u>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웰니스 <u>항노화 산업</u>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웰니스 <u>항노화 산업</u>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니스 <u>항노화산업</u> 육성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웰니스 <u>항노화산업</u>의 실태조사 및 기반조성·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3. 웰니스 <u>항노화산업</u>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활성화 방안 4. 웰니스 <u>항노화</u> 소재·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웰니스 <u>항노화산업</u> 관련 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판로, 서비스 프로그램의 <u>육성방안</u>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관리 및 <u>항노화 산업</u>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u>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u>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u>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u>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u>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u>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u> 육성 및 지원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u>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u>의 실태조사 및 기반 조성·<u>협력지구</u>에 관한 사항 3. <u>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u>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활성화 방안 4. <u>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u> 소재·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u>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u> 관련 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판로, 서비스 프로그램의 <u>육성 및 지원</u>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6. 웰니스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민·관·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7. 웰니스 향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웰니스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법인(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향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향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관련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웰니스 향노화산업 소재·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2. 관련사업자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원료·제품·서비스의 표준화와 상표개발 및 등록 3. 향노화 식물의 원료 생산과 향노화 제품의 생	<u>방안</u> 6.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민·관·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7.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법인(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관련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소재·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2. 관련사업자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원료·제품·서비스의 표준화와 상표개발 및 등록 3. 향노화 식물의 원료 생산과 향노화 제품의 생	○ (원안 제1항) 원안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안 제2항을 고려할 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맞게 조문을 수정함 ○ (원안 제2항)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산·판로 지원, 서비스 마케팅 4. <u>웰니스 향노화산업</u> 생산제품 및 서비스의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5. <u>웰니스 향노화산업</u> 관련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위원회) 시장은 <u>웰니스 향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u>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u>웰니스 향노화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u>변경</u>에 관한 사항 2. <u>웰니스 향노화산업</u>의 기반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u>웰니스 향노화산업</u>의 육성 및 <u>지원</u>에 관한 사항 4. <u>웰니스 향노화산업</u>의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 간담회, 포럼·토론회 활동 5. <u>웰니스 향노화산업</u> 관련 공동연구 및 제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u>웰니스 향노화산업</u> 육성과 관련하여	산·판로 지원, 서비스 마케팅 4. <u>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u> 생산제품 및 서비스의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5. <u>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u> 관련 교육 및 홍보 〈삭 제〉 제7조(태백시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시장은 <u>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의 육성·지원</u>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태백시 <u>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u>변경</u> 2. <u>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u>의 기반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 3. <u>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u>의 육성 및 <u>지원</u> 4. <u>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u>의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간담회, 포럼·토론회 활동 5. <u>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u> 관련 공동연구 및 제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u>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u> 육성과 관련하여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안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원안 제2항과 같은 규정은 불필요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성별은 6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웰니스 향노화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부서의 장 2. 웰니스 향노화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단체 임직원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웰니스 향노화산업 관련 대학교수 또는 강사 4. 웰니스 향노화산업 관련 지역 내 기업이나 기관·단체·법인의 대표 5.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삭 제〉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관련 전문 연구기관·단체 임직원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관련 대학교수 또는 강사 다.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관련 지역 내 기	○ (원안 제3항 전단) 검토안 제3항에 통합하여 규정함 ○ (원안 제3항 후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것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적용하여 위원회의 성별을 구성하면 될 것임) ○ (원안 제4항제5호)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에 설치되고,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가 소속된 위원회 위원을 스스로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5항)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이에 관하여 운영세칙 등에서 세부내용을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⑤ 위원회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향노화산업 담당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u>업이나 기관·단체·법인의 대표</u> <u>라.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u> 〈삭 제〉 〈삭 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u>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u> <u>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분과위원회 관련 내용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므로 검토안 제12조제4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 (원안 제6항) 검토안 제13조로 이동하여 규정함 ○ (원안 제4항) 원안 제9조제1항을 이동하여 규정함 - 연임 규정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함 ○ (검토안 제5항) 원안 제9조제2항을 이동하여 규정함.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은 모든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검토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제9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당</u> <u>연직 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u> <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② <u>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u> <u>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삭 제〉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신 설〉</u>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u>위원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u>해당 안건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 2. <u>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u> ② <u>그 밖에</u>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척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u>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u> 1. <u>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u> 2. <u>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u> 3. <u>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u> 4. <u>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u> 5. <u>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u> 6. <u>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u>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u>위원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u> 2.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u> ② <u>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u>	○ 원안 제11조를 이동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웰니스 향노화산업과 관련한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검토안 제9조로 이동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원안 제8조제6항을 이동하여 규정 ○ 운영세칙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4조(민간협의회 구성) 시장은 <u>지역 웰니스 향노화 분야의 지역민</u>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u>구성·운영</u>할 수 있다. 제1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u>다음 사항을 협의·조정</u>한다. ① <u>향노화</u> 식물의 표준화 재배 및 확대·원료 공급 ② <u>향노화</u> 산업 R&D를 위한 지원활동 ③ <u>향노화</u> 제품의 인증 및 개발·생산·마케팅 활동 ④ <u>웰니스 향노화산업</u>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⑤ 기업체·직능단체·마을 간의 <u>정보</u> 공유 및 상	위원회 및 <u>분과위원회</u>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제15조(민간협의회 설치) 시장은 <u>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분야의 지역주민</u>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u>설치·운영</u>할 수 있다. 제1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u>한다. 1. <u>향노화</u> 식물의 표준화 재배 및 확대·원료 공급 2. <u>건강관리 및 향노화</u> 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활동 3. <u>건강관리 및 향노화</u> 제품의 인증 및 개발·생산·마케팅 활동 4. <u>건강관리 및 향노화</u> 산업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5. 기업체·직능단체·마을 간의 <u>건강관리 및 향노</u>	향도 포함시킬 필요는 없는지 검토 필요 ○ 원안 제7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기능과 민간협회의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것처럼 보임 이므로 지원위원회와 민간협회를 별개로 설치·운영할 의도라면 그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문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원안에서는 민간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해당 사항을 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원안 각 호의 규정을 보면 향노화만으로 규정한 것과 웰니스 향노화로 규정한 것이 혼재되어 있는 바, 이는 향노화와 웰니스 향노화를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향노화에서 웰니스라는 표현누락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제2호에서 “향노화 산업”은 “웰니스 향노화 산업”의 오기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호협력 활동 ⑥ 그 밖에 지역 웰니스 향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및 기업 유치 활동 제16조(실비보상) 시가 주관하는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웰니스 향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웰니스 향노화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	화 산업 관련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활동 6. 그 밖에 지역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관련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및 기업 유치 활동 〈삭 제〉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삭 제〉	○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2조에 따르면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안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위원 수당 등 지급은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원안은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18조의 내용을 이동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회 및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 및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u> <u>부 칙</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부 칙</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안

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 28.]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836호, 2018. 9. 2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노화”란 노화와 관련된 습관, 증상, 질환을 적극적으로 진단·예방·관리·치료하여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과 노화현상을 지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백두대간 아고산대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이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의 실태조사 및 기반조성·협력지구에 관한 사항
3.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활성화 방안
4.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소재·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관련 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판로, 서비스 프로그램의 육성 지원 방안
6.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한 민·관·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7.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법인(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지원) 시장은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을 수행하는 관련사업자나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소재·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2. 관련사업자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원료·제품·서비스의 표준화와 상표개발 및 등록
3. 향노화 식물의 원료 생산과 향노화 제품의 생산·판로 지원, 서비스 마케팅
4.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생산제품 및 서비스의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5.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제7조(태백시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육성 지원위원회) 시장은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태백시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육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의 기반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

3.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육성 및 지원
4.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간담회, 포럼·토론회 활동
5.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공동연구 및 제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과 관련한 시 소속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전문 연구기관·단체 임직원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대학교수 또는 강사
 - 다.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법인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임직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시 소속부서의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관련 주무담당이 된다.

제15조(태백시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민간협의회 설치) 시장은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분야의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민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태백시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향노화 식물의 표준화 재배 및 확대·원료 공급
2.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활동
3. 건강관리 및 향노화 제품의 인증 및 개발·생산·마케팅 활동
4.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5. 기업체·직능단체·마을 간의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관련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활동
6. 그 밖에 지역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관련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및 기업 유치활동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업체 및 단체의 대표
2. 직능대표 및 마을대표
3. 영농조합 대표
4. 보건의료인 및 공인 치유지도사

5.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관련 시 소속 주무부서의 장

제1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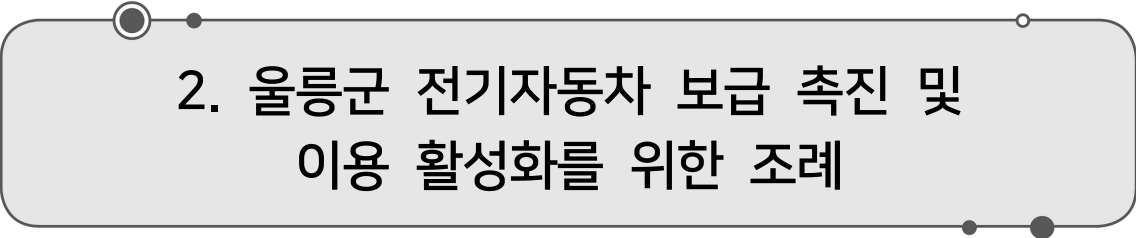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건강관리 및 향노화 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 및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요 청 기 관 : 울릉군 기획감사실

조례안 종류 : 자치조례, 제정안

조례안 접수일 / 조례 공포일 : 2018. 3. 7. / 2018. 8. 8.

입법컨설팅 검토안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조례가 아니므로, 법 인용을 삭제하여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 ○ 원안 제2호의 충전인프라는 충전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 별도로 조례에서 정의할 실익이 적음.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올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u>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u>(이하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u>활성화계획</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올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u>보급촉진시책</u>”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u>보급촉진시책</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의 보급 계획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 원안 제3조 중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삭제함. ○ 친환경자동차법의 용어와 통일함 ○ 자구를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필요한 사항</u> ③ 군수는 <u>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u> <u>관련분야 전문가와 울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u> 제5조(군민 등의 협조와 권리) ① 군민은 <u>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시책 수립에 협조하고</u> <u>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시설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u> 제6조(사업자의 협조와 권리) ① <u>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u> ② <u>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시설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u> 제7조(운행기간) ①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u>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③ 군수는 <u>보급촉진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울릉군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u> 〈삭 제〉 〈삭 제〉 〈삭 제〉	○ 협조 의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별도의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함. - 또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되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 협조 의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별도의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함. - 또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되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원안 제7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1. <u>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경비)을 받은 자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소유권 이전, 양도·매매가 불가능</u> 2. <u>차량 등록일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18개월은 울릉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 준수</u> ② <u>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u> <u>제8조(우선구매) 군수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u> <u>제9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 충전기와 관련된 한국산업표준규격 또는 단체	〈삭 제〉 〈삭 제〉 제5조(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을 재기재한 것으로 삭제함. ○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제1항을 재기재한 것으로 삭제함. ○ 원안 제9조제1항제1호의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9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전기자동차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재기재 실익이 없어 삭제하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거나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인프라 설치·보급 사업</u> 3. 그 밖에 군수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울릉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 2. 「울릉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1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충전기 관리·운영을	② 군수는 <u>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울릉시 주차장 조례」 제○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u> 제6조(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는 것으로 정리함. ○ 원안 제9조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검토안 제6조에서 일반적인 지원 근거로 규정함. ○ 담당자 확인 결과, 원안 제10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아직 정해진바 없고, 「울릉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므로 검토안 제5조제2항의 예시와 같이 규정하며, 「대기환경보전법」보다 친환경자동차법이 직접적인 근거법령이므로 근거법령을 수정함. - 또한, 추후 「울릉군 주차장 조례」에 구체적인 감면기준을 정할 것을 권고함.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위하여 울릉군 소유의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기관)는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기관)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기관)가 위·수탁 운영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의 경비지원에 관해서는「울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관리법」 제27조에 따르고,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을 준용하고 있는바, - 원안 제3항의 “위탁의 취소”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제7호에서는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계약 해제·해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는 관리위탁 계약 시 계약의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수안의 내용을 별도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음. ○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은 불필요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부 칙</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부 칙</u> 이 조례는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경우, 시행규칙 등의 제정을 위하여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이 없는 경우, 원안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음

■ 공포안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시행 2018. 8. 8.]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898호, 2018. 8. 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의 보급 계획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보급촉진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울릉군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울릉군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충전기 관리·운영을 위하여 울릉군 소유의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운영 협약을 위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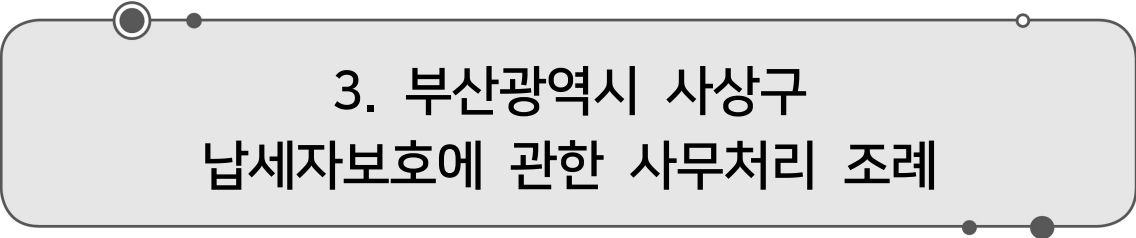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요 청 기 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획감사실

조례안 종류 : 위임조례, 제정안

조례안 접수일 / 조례 공포일 : 2018. 3. 2. / 2018. 4. 30.

입법컨설팅 검토안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의 용어(“배치”)를 사용하고, 사무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가 아닌 규칙이나 훈령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표현인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함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면서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명확하게 함 ○ 원안 제1항제1호의 “세무부서”는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고도 의미가 명확하므로 삭제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 원안 제1항제2호의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법률의 용어와는 다르게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서는 별도의 정의 없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의미가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안에서 삭제하고, 이하 "고충민원"은 법률과 동일하게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으로 수정하면서 해당 용어가 최초로 나오는 검토안 제6조에서 "고충민원"으로 약칭함 ○ 원안 제1항제3호의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는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의미가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삭제하고, 이하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약칭함(검토안 제2조) ○ 원안 제1항제4호의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하고 있고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권리보호라는 의미 자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 다르지 않으므로 정의규정에서 삭제하고, 민원인이 세무조사 및 지방세 관련 집행 과정에서 권리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과 구분하여 권리보호요청으로 약칭함(검토안 제12조)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를 자치법규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원안 제2항을 삭제함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은 상위법령으로 당연히 이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이 조례와 관련법령과의 적용 관계를 규정할 실익이 없음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 <u>〈신 설〉</u> 2. 그 밖에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 <u>2. 가산세 감면 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u>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u> <u>〈신 설〉</u> ②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u>2.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u> <u>3.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 등 조사</u> <u>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u>1.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전</u> <u>2.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할</u>	○ 원안 제2항은 납세자보호관 권한의 범위에서 담당 부서에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가 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안전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부산광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삭 제〉	○ 원안 제3항이 없더라도 구청장은 자격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임 - 다만, 원안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함 ○ 조례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	〈삭 제〉	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며 조례로 추가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 원안 제8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법리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안을 마련한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제4호)은 조례로 추가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검토안 제4조제2항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6조(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다만, 각하(却下)된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다만, 법 제8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결정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3.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부산광역시시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행정안전부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	<u>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u> <u>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u> <u>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u> 〈삭 제〉	○ 검토안 제6조에 통합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u> 6. <u>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u> <u>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u>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 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 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 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분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으로 분류하 여 처리한다. 1. 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세무공무원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제기된 민원 3. 그 밖에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삭 제〉 제7조(고충민원의 접수)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 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 고충민원의 범위 및 처리 방법을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충민원의 분 류를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음 ○ 제척기간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가 고충민원의 제기기간과 직접적 관련이 있 다고 할 수 없고, 법률에 민원 제기 기간을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u>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u> 제14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u>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신기한 내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신 설〉	<u>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u>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u>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u> 제9조(고충민원의 검토) ① <u>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u> ② <u>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u>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조례에서 민원 제기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안과 같이 고충민원의 접수에 관한 내용으로 대체함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법제처 2018. 2. 1. 의견제시 18-0024 참조). - 다만,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원안이 다르지 않으므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영 제51조의2제5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리방법의 대략적인 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하여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신 설〉	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 시정 대상: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나.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 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회부 대상: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 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하여야 할 것임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5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	1.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구청장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 다만, 구청장은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가. 구청장에게 위원회 상정 요구 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3.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4. 제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고충민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u> <u>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u> <u>제16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u> <u>제17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초 처분 보다 민원인에게 불</u>	〈삭 제〉 〈삭 제〉	민원에 해당하고, 고충민원의 취하,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원안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다르지 않으므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이하 원안 제16조도 같음) ○ 원안 제17조는 당초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석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u> 제18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u>아니한다.</u> 제19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u>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u> ② <u>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u>	제11조(불복대상에서의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u>않는다.</u> 〈삭 제〉	될 우려가 있고, 적법한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인바,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재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 사항도 없는데 조례로 구청장의 부과·징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구청장의 집행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 세무부서의 장이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요청을 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등을 하는 절차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이므로 조례에 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님(이하 원안 제20조도 같음) -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 또는 훈령 등의 형식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0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려면 조사개시 3일 전까지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고, 법률에 세무조사 연기신청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조례에서 세무조사 연기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함
제22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삭 제〉	○ 원칙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것이고, 납세자보호관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이므로 조례에 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님 -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 또는 훈령 등의 형식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제23조(고충민원과 구분)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 구분된다.</u>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u>제24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u>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	<u>제12조(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과의 구분) 납세자 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3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하 “권리보호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고충민원과 구분하여 처리한다.</u>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u>제13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u>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	○ 또한, 원안에 따라 민원인이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고,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조사개시 후에 승인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u>아니하고</u>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u>아니하고</u>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u>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u> 1. <u>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u>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u>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u>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	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u>않고</u>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u>않고</u>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u>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u> 1. <u>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u>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u>독촉 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u>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u>아니하고</u> 타인에게 제공 또는 <u>누설하거나</u>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u>제25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에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u> <u>제2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u>	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u>않고</u> 타인에게 제공 또는 <u>누설하거나</u>,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u>제14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u> <u>제15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담당관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u>	○ 지방세 부과에 제척기간과 권리보호요청 기한이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률에 권리보호요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조례에서 권리보호요청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안과 같이 권리보호요청의 접수에 관한 내용으로 대체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76조에 따라 제정된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의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4조에 따라 접수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한다. 제17조(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현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권리현장 위반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 제51조의2제5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방법의 대략적인 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제28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u> <u>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이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제29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u> <u>부칙</u>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신 설〉</u>	<u>제18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u> <u>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u> <u>〈삭 제〉</u> <u>부 칙</u>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u>	○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안 제2항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보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개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령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검토안 제18조제2항과 같이 세무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조례 시행 전에 민원이 접수되어 진행 중인 건에서도 적용할지, 이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할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삭 제〉	○ 다른 법령의 개정방식은 제정·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법령의 부칙에서 “그 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구 수정 또는 경미한 개정 등 정리 차원의 개정에 한정되고 할 것인바, 지방세기본법령의 위임에 따른 이 조례의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삭제함

■ 공포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4. 30.]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899호, 2018. 4. 3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
2.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2.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 등 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안전
2.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전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전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다만, 각하(却下)된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다만,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결정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3.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4.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과 관련된 사항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신청)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고충민원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 시정 대상: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 나.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
 -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 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원회 회부 대상: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구청장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 다만, 구청장은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 2.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 가. 구청장에게 위원회 상정 요구
 - 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 3.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 4. 제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 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불이익변경금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은 구청장이 당초 처분 시 누락된 부분 등을 발견한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처분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불복대상에서의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과의 구분)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하 “권리보호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고충민원과 구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14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 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5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에 따라 접수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한다.

제18조(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현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권리현장 위반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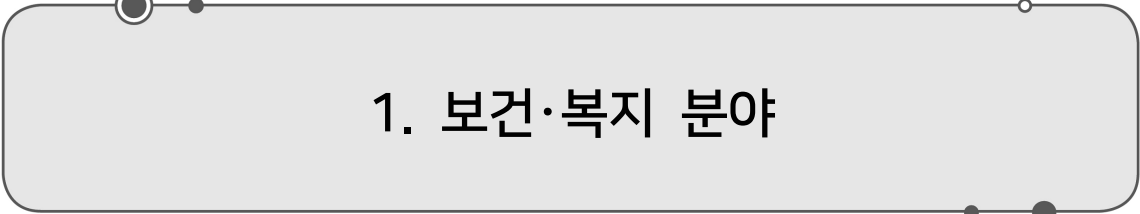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2018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제3장

분야별 입법컨설팅 사례





1. 보건·복지 분야

안건명 : ○○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군 기획감사실 (2018. 3. 23. 접수)

조례종류 : 위임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근거 법률을 추가함. ○ (원안 제3호) 기준 중위소득의 근거 법률을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장애인으로</u>서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u>긴급지원대상</u>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u>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u>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u>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u>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u>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u> 가구의 아동 8. <u>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u>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u>○○군 아동 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u>	<u>한 장애인으로서</u>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u>긴급지원대상자</u>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u>보호자의 사고, 질병</u>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u>보호자의 아동학대</u>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보호자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u>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u> 가구의 아동 8. <u>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u>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u>제8조에 따른 ○○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u>	명시함. ○ (원안 제6호) 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아동학대로 문구를 정리함. ○ (원안 제7호) 담당자 확인 결과,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나타내는바, 이를 명확하게 함. ○ (원안 제8호) 근거 법률을 추가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 <u>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u>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u> 2. <u>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u> 3. 도시락 지원 4. <u>부식 지원</u>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u>급식 방법</u> ② 군수는 <u>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u>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u>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u>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u>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u>단체급식</u> 2. <u>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u> 3. 도시락 지원 4. <u>식재료 지원</u>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u>방법</u> 〈삭 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u>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u>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 원안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통합하여 검토안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함. ○ 검토안 제1항에 포함하여 규정함. ○ 자구를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급식 신청 절차) 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급식지원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삭 제〉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	○ 원안 제4조제1항의 내용을 검토안 제4조로 이동하여 규정함. ○ 검토안 제4조로 이동하여 규정함. ○ 자구를 수정함. ○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 가족 또는 이웃 등이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군수는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삭 제〉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 ○ 원안 제5조의 조사는 검토안 제6조제1항에서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에 포함되므로 삭제하는 방안으로 정리함. ○ 자구를 수정함. ○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청할 수 있다.</u> <u>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u>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및 급식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7.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8.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9.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급식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검토가 필요함. ○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 순서에 맞추어 조문을 정리함. [위원회 규정 순서] ① 위원회의 설치 → ② 기능 → ③ 구성 → ④ 위원 임기 → ⑤ 위원 신분 → ⑥ 위원장의 직무 → ⑦ 위원회 존속기한 → ⑧ 위원회의 운영 → ⑨ 위원회의 사무기구 또는 간사 → ⑩ 위원 수당 → ⑪ 위원회 운영 세칙 ※ 『법령심사 매뉴얼』 305쪽 참조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8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급식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학부모, 교사, 교육청, 음식점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급식업무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급식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검토안 제13조제6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은 모든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지 않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u>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u> ③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④ <u>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u> 〈신 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u>외의</u>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u>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한다.</u> ② <u>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영양·위생·만족도·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③ <u>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u> ④ <u>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⑤ <u>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u> ⑥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 급식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u>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u>외에</u>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생·안전 교육 등) ① <u>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안전 교육을 한다.</u> ② <u>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위생 등을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u>	○ 원안 제9조제4항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검토안 제13조제6항으로 이동하여 신설함. ○ 자구를 수정함. ○ 자구를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u>급식지원 사업에</u> 관심이 있는 사람 <u>제15조(급식아동 후원) 군수는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	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u>아동 급식지원에</u> 관심이 있는 사람 〈삭 제〉	○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36조에서는 급식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급식지원 외에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은 위임된 바 없음. -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3가지 경우만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안은 이러한 법령상 기부금품의 모집 제한에 위반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〇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될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함.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다면, 시행규칙의 제정을 위하여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별지 서식]

아동급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sqrt{\quad}$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여부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여부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신청 의견	신청사유 (자세히 기재)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연중 조 · 석식: []조식 []석식 [] 학기 중 토 · 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
	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도시락 지원 [] 식재료 지원 [] 그 밖의 방법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으로 신청(추천)합니다.

20 21 22 23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가 가려진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군수 귀하

안전명 : ○○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시 기획예산담당관 (2018. 4. 26. 접수)

조례종류 : 자치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u>인구 유출입(流出入) 등 인구변화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대응기반 조성을 위한</u>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流出入)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u>정책</u>을 말한다.	○○시 인구정책 <u>기본 조례안</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u>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u>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流出入)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u>어느 하나에 해</u>	○ (제명) 여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 원칙이나 정책 방향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기본 조례”라는 제명을 사용하는 바, 이 조례안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명에서 “기본”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법령 입안·심사 기준』659쪽 참조) ○ (원안 제1조) 이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 등 <u>시의 정주여건</u> 개선을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시의 <u>인구감소 방지 및 인구증가</u>를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세대 중</u>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u>인구정책</u>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u>결혼지원</u>	<u>당하는 정책</u>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 등 <u>정주여건</u> 개선을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시의 <u>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u>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u>있고</u>,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u>인구정책 과제</u>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u>결혼 지원</u>	○ (원안 제2호) ‘세대 중 ~가정’이란 표현은 어울리지 않음. ○ (원안 제4조) 인구정책사업 지원에 대한 종합 의견 - 「○○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장이 원안 제4조와 같은 인구정책사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임신·출산지원 가. 임신·출산·입양·축하선물 지급 나. 임산부·태아·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다. 그 밖에 임신·출산에 <u>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u>을 위한 지원 3. <u>임신·출산·양육·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u> 조성 지원 4. <u>다자녀 가정</u>에 대한 지원 5.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6.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u>인구정책사업의 시행</u>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법인·	2. 임신·출산 지원 가. 임신·출산·입양 축하선물 지급 나. 임산부·태아·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다. 그 밖에 임신·출산에 <u>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u> 위한 지원 3. <u>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하도록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u> 조성 지원 4. <u>다자녀가정</u>에 대한 지원 5.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6.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u>사업을 추진하기</u>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법인·단체·	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등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주요 참고 판례 및 의견제시 사례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 법제처 의견제시 17-0268(장성군 인구 늘리기 조례안) ○ (원안 제2항) 인구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 규정과 위탁규정을 제2항과 제3항으로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임산부 등의 우대) ① 시장은 임신·출산·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하거나 <u>감면</u>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을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인구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u>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u>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임산부 등의 우대) ① 시장은 임신·출산·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하거나 <u>감경</u>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을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리함. ○ (원안 제5조제1항) 이 조례안과 같은 지원조례에서 공공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사용료 감면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개별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감면대상과 감경율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함. ※ 부칙 제2조 삭제사유 참고 ○ (원안 제6조) 위원회를 둘 의도라면 검토안과 같이 “둔다”라고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 4.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구정책업무 부서장 2.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가족·노인 지원 관련 업무 부서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원 2명 나. 인구정책 분야에 <u>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u>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 5.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삭 제〉 1.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가족·노인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원 2명 나. 인구정책 분야에 <u>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 (원안 제1호, 제2호) ○○시의 입법취지 확인 결과, 원안 제1호의 '인구정책업무 부서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검토안 제2항과 중복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하며, 원안 제2호의 '부서장'은 인구정책 업무관련 담당 과장을 의미하므로 표현을 명확히 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① <u>위촉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u>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u>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u>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u>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① <u>위촉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u>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u>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u>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u>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u>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	○ (원안 제8조제1항) 위원의 임기를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9쪽 참조) ○ (원안 제8조제2항)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은 모든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2항은 필요성 검토를 요함. ○ (원안 제9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를 밝히는 경우</u>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삭 제〉 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u>개의(開議)</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원안 제1호)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므로 삭제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④ 안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담당 주사로 한다. 제13조(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전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전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 (원안 제12조) “인구정책담당 주사”는 법령 및 조례 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도록 수정함. ○ (원안 제2항) 「〇〇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례 제15조제5항, 제6항이 적용되므로 원안의 내용은 불필요하여 삭제함. [〇〇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4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을 「<u>○○시 포상 조례</u>」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과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5조(수당 등) ①~④ 생략 ⑤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교통비 등 실비는 「○○시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 (원안 제14조) ○○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 없더라도 「○○시 포상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재기재할 실익이 없어 「○○시 포상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부 칙</u>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〇〇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〇〇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 ② 「〇〇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3.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란의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을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〇〇시 인	<u>부 칙</u> 이 조례는 <u>공포한 날부터</u> 시행한다. 〈삭 제〉	○ (원안 부칙 제1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경우, 시행규칙의 제정을 위하여 조례를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원안 부칙 제2조)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03쪽 참조) -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은 실제적인 내용이어서 다른 조례 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을 권고함. ※ 또한, 실무적으로는 이 조례안과 부칙 제2조제1항·제2항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르다면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으로 한다.</u> <u>별표 중 7. □□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 중 □ 헬스장·다목적홀 이용료의 구분 중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 「○○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으로 하고,</u> <u>“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 어린이”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 어린이, 「○○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으로 한다.</u> <u>별표 중 8. ○○수영장 이용료 란의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을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으로 한다.</u>		할 경우 조례안 심의권 침해 소지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임.

안건명 : ○○군 청년 지원 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군 기획홍보실 (2018. 3. 23. 접수)

조례종류 : 자치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군 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청년의 <u>사회참여</u>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u>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u>	○○군 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청년의 <u>사회 참여</u>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u>말한다.</u>	○ (원안 제1호) “청년”의 정의에서 청년의 나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개별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두는 정의규정의 의의 자체에 부합하지 않고, 불확정적인 “청년”의 의미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검토안 제5조), 청년정책 사업(검토안 제16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협력 등(검토안 제18조) 등 조례안 전체의 규정에 효력을 미치게 되어 조례안의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서 “청년”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계 법령을 준수함이 타당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하면 되므로 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음. -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그 지원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해당 조례의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이 조례 검토안에서 “청년”의 의미는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법제처 2017.9.27. 의견제시 17-0253 참조) ○ (원안 제2호) 의미를 명확히 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농어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을 말한다. 6. “퇴소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u>사람</u>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농어업인”이란 청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6. “퇴소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u>청년</u>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원안 제5호) 청년농어업인을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리함. ○ (원안 제6호) 의미를 명확히 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행하여야 한다. ② <u>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u>주요사항</u> 가. 청년의 자립기반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u>모든 분야에서</u>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u>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업지원</u> 다. 청년의 <u>능력 등의 개발지원</u>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u>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u> 사. 그 밖에 청년의 <u>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u> 위하여 필요하다고 <u>인정되는</u>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시행하여야 한다. ② <u>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u>주요 사항</u> 가. 청년의 자립기반을 <u>확립하기 위하여</u>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u>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u>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u>고용 촉진 및 일자리·창업 지원</u> 다. 청년의 <u>능력 개발 지원</u>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u>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문화 공간 마련</u> 사. 그 밖에 청년의 <u>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u> 위하여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u>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원안 제2항)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함. ○ (원안 다목) 간결한 문장으로 수정함. ○ (원안 바목) 알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함. ○ (원안 사목) “복지증진 등”에서 “등”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삭제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4. 제8조에 따른 ○○군 청년정책위원회 및 제 14조에 따른 청년협의체 등 <u>민관협력 체계의 운영</u> 5. 그 밖에 <u>청년정책의</u> 추진에 필요하다고 <u>인정 되는</u>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u>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 <u>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7조(기초조사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	4. 제8조에 따른 ○○군 청년정책위원회 및 제 14조에 따른 청년협의체 등 <u>민관협력체계의 운영</u> 5. 그 밖에 <u>군수가 청년정책</u> 추진에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u>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u>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u> 〈삭 제〉 제7조(기초조사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	○ (원안 제5호) 능동형 문장으로 수정함. ○ (원안 제1항) 자구 수정 ○ (원안 제2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으로 통합하여 검토안 제8조제1호, 제2호에 정리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u>시행계획</u>의 수립 및 변경 2. <u>시행계획</u>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u>청년정책</u>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u>청년정책</u>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 <u>실·과·소장</u> 2. <u>다음 각 목에</u>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u>연도별 시행계획</u>의 수립 및 변경 2. <u>연도별 시행계획</u>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u>청년정책</u>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u>청년정책</u>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 <u>실장·과장·소장</u> 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 (원안 제1호, 제2호) 시행계획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 ○ (원안 제1호, 제2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u>경험이 풍부한</u>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u>적합하 다</u>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u>의 사임 등으로</u> 새로 위촉된 <u>위원</u>의 임기 는 전임 <u>위원</u>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u>위원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위촉을 해 제</u>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u>아니하는</u>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u>위촉 해제</u>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u>부적</u>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u>전문성이 있는</u>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u>필요하 다</u>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u>위원의 사임 등으로</u> 새로 <u>위촉된 위원</u>의 임기 는 전임 <u>위원</u>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u>위촉위원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u> <u>위원을</u> <u>해촉(解囑)</u>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u>않는</u>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u>해촉</u>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u>적합</u>	○ (원안 다목) 나목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문장 을 수정함. ○ (원안 제5항)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 업무의 연속 성 등을 고려할 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의 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9쪽 참조)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당하다고</u>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u>대행한다</u>.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u>임시회의</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u>회의소집</u>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u>하지 않다고</u>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u>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u>임시회의</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u>회의</u>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 (원안 제2항)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내용을 보충할 것을 권고함. ○ (원안 제2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쌍점(:)은 앞말에 붙여 쓴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8판) 313쪽 참조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청년정책</u>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청년협의체 구성·운영) ① 군수는 청년이 청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청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u>의견수렴</u>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u>청년협의체</u>와 협력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u>과정</u>에의 참여 2. 청년정책 관련 의제의 <u>발굴·제안</u> 3. 청년정책 추진 <u>과정</u>에의 참여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필요하면 위원회에</u>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청년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이 청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청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u>의견 수렴</u>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u>제1항에 따른 청년협의체</u>와 협력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u>과정</u> 참여 지원 2. 청년정책 관련 의제의 <u>발굴 및 제안의 지원</u> 3. 청년정책 추진 <u>과정</u> 참여 지원	○ (원안 제4항) 분과위원회 설치의 일반적 입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 ○ (원안 제2항) 참여, 제안 등의 주체가 '청년협의체'가 아닌 '군수'인 것처럼 보이므로 문맥상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 호의 내용을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신 설〉</u> 제15조(청년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u>공간으로</u>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u>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u>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정책 사업) ① 군수는 <u>청년정책</u>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u>자에게</u>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나.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u>청년 또는 청년활동</u> 촉진 및 지원	<u>③ 제1항에 따른 청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u> 제15조(청년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u>공간으로서</u>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정책 사업) ① 군수는 <u>청년정책</u>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u>자를</u>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나.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u>청년활동</u> 촉진 및 지원	○ (검토안 제3항) 청년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안 제1항) 군수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므로 그 경비는 군수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바, 경비 지원 부분은 삭제함. ○ (원안 제16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과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군 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 등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u>역량개발</u> 지원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청년 <u>능력개발</u>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3.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나. 비정규직에 대한 <u>고용차별</u> 개선 및 일자리의 질 <u>향상</u> 지원 다.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u>창업기반</u> 조성 라.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 4.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지원 다. <u>공간</u> 정보 제공 및 매입·임대료 지원 라. <u>청년</u> 정착주택 지원 마. <u>청년세대</u> 자녀 의료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바. 대학생 학자금 <u>무이자</u> 대출 및 이자 지원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군 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 등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u>역량 개발</u> 지원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청년 <u>능력 개발</u>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3.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나. 비정규직에 대한 <u>고용 차별</u> 개선 및 일자리의 질 <u>향상</u>을 위한 지원 다.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u>창업 기반</u> 조성 라.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 4.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지원 다. <u>빈집</u> 정보 제공 및 매입·임대료 지원 〈삭 제〉 〈삭 제〉 라. 대학생 학자금 <u>대출</u> 및 이자 지원	할 수 있는바, 이 조례안의 “청년정책”사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법률에 별도 지원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후176 판결 참조),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지방재정법」 제 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청년 및 청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제한의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앞서 제시한 판례 등을 참고하여 ○○군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원안 라목) 검토안 가목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과 중복되어 삭제함. ○ (원안 마목) 검토안 나목의 ‘보건’과 중복되어 삭제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나. <u>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u> 다. <u>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u> 라. <u>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u> 마. <u>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u> 바. <u>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u> 사. <u>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u> 아. <u>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u> 6.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농어업인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삭 제〉 나. <u>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u> 다. <u>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u> 라. <u>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획 및 활동 지원</u> 마. <u>청년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공간 조성</u> 바. <u>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u> 사. <u>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연결망 활성화</u> 6.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농어업인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 (원안 바목) 의미를 명확히 함. ○ (원안 나목) 검토안 제7조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 (원안 바목)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함. ○ (원안 아목)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및 홍보 나. 농지 및 <u>어업</u>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다. 청년농어업인 양성을 위한 연수비 지원 라. <u>청년농업인 농기계 구입 및 수리비 지원</u> 바. 청년농어업인 체험 연수를 위한 국내 및 해외 연수 지원 사. <u>청년농어업인</u> 농어업 자재대 지원 아. <u>청년 취농·취어 급부금 지원</u> 8. 퇴소청년의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퇴소청년 대학학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나. 퇴소청년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다. 퇴소청년 취업상담 및 구직 지원 라. 퇴소청년 직업훈련 및 <u>컨설팅 서비스</u> 마. 퇴소청년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지원 9. 청년단체 활동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나.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홍보 나. 농지 및 <u>어업</u>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다. 청년농어업인 양성을 위한 연수비 지원 라. <u>청년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용 기계 구입 및 수리비 지원</u> 바. 청년농어업인 체험 연수를 위한 국내 및 해외 연수 지원 사. <u>청년농어업인에 대한</u> 농어업 자재대 지원 <u>아. 농어업분야 종사를 위한 자금 지원</u> 8. 퇴소청년의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퇴소청년 대학학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나. 퇴소청년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다. 퇴소청년 취업상담 및 구직 지원 라. 퇴소청년 직업훈련 및 <u>상담 서비스 지원</u> 마. 퇴소청년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지원 9. 청년단체 활동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나.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원안 라목) 어업인을 포함하여 수정함. ○ (원안 사목)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함. ○ (원안 아목)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 (원안 라목)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다.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 라. <u>청년단체 등의 역량강화</u>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마. <u>청년단체 등과 지역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 행사</u> 바. <u>청년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u> 사. <u>청년단체 국내외 우수사례 체험 연수비</u> 지원 아. <u>청년단체 활동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등</u>	다.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 라. <u>역량강화</u>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마. <u>지역주민과의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지원</u> 바. <u>국내외 교류 및 연계망 구축</u> 사. <u>국내외 우수사례 체험 연수비</u> 지원 〈삭 제〉	○ (원안 바목)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함. ○ (원안 아목)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비 성격의 보조로 보이므로 이 조례에서 삭제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략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⑥ 생략
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단체에 위탁	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제한)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만 지원한다. 제1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의 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제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지원한다. 제1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의 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원안 제17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이라면, 시행규칙 등의 제정을 위하여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건명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시 기획조정실(2018. 4. 23. 접수)

조례종류 : 자치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 검토안의 예시와 같이 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를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3. 그 밖에 센터가 지정하는 날 제3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및 보호자 2. 시 소재 어린이집 및 <u>보육 교직원</u> 3. <u>회원으로 등록한 자</u> 4. <u>그 밖에 센터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u>	3. 그 밖에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3조(이용대상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호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시 소재 어린이집 및 <u>보육교직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말한다)</u> 3. <u>제4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자</u> 4. <u>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u>	○ 원안에서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하 원안의 조문규정을 고려할 때 센터의 시설은 회원등록을 하여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과 회원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분할 수 있고, 원안 제4조에 따르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센터의 이용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과 그 외의 시설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이용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조문의 이해를 위해 바람직할 것임 ○ (원안 제1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해당하고, 지자체 확인 결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및 보호자를 의미한다고 하므로 그에 맞게 영유아 및 보호자의 의미를 규정해 줌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4조(회원제 운영) ① <u>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u> ② <u>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u> 1. 개인회원: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 2. 기관회원: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및 그 밖의 협약 기관 ③ <u>개인회원은 미취학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회원증을 2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u> ④ <u>회원의 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유지된다.</u>	제4조(회원제 운영) ① <u>센터의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 1. 개인회원: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 2. <u>기관회원: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및 그 밖의 협약 기관</u> ③ <u>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1개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 다만, 취학 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개인회원에게는 회원증을 2개까지 발급할 수 있다. ④ <u>회원의 자격은 제6조제2항제2호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u>	○ (원안 제2호 보육교직원 관련) 보육교직원의 정의에 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되어 있고, 이 조례에 규정된 보육교직원의 의미도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의미로 보이는 바, 보육교직원의 의미를 「영유아보육법」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음 ○ (원안 제1항 회원 등록 관련) 원안에서는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에 대해서만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안 별표 1에 따르면 육아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대상도 개인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하고 있어 회원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의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별표 1과 같이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회원등록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여 별표 1과 같이 규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내용을 조문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함 ○ (원안 제1항 시설 관련) 「〇〇시 영유아보육조례」 제9조에 따르면 센터에는 자료실, 상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⑤ 회원은 센터 내 시설의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회원가입 및 탈퇴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회원은 센터 시설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원 등록 및 탈퇴 절차 등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담실, 교육실, 장난감 및 도서대여실, 놀이공간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센터의 시설 종류로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양 조례에서 상호 일치시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〇〇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9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〇〇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장난감 및 도서대여실, 놀이공간 등을 둔다. ○ (원안 제1항제2호)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생활시설, 그 밖의 협약 기관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과 같이 해당 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 「〇〇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〇〇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와 관련 없는 자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벗어날 수 있으므로 장애인생활 시설 및 그 밖의 협약 기관을 영유아와 관련 된 시설로 한정하거나 영유아와 관련 없는 자는 이용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 (원안 제3항) 조문체계 상 시장이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본문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므로 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5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u>하였을 경우</u>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 <u>서비스 운영</u>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등록된 개인정보가 허위인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5. 타인에게 명의를 대출한 경우 6. 가입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7. 센터의 물품을 <u>직원의</u>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8. 가입 후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한 사람이 <u>인</u>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u>상실 시점으로부터</u>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5조(회원 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u>한 경우에는</u>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u>다른 사람의</u>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 <u>운영</u>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u>회원으로</u> 등록한 개인정보가 허위인 경우 4. 회원이 다른 이름으로 <u>회원 등록</u>을 중복하여 한 경우 5. <u>다른 사람에게</u> 본인의 명의를 <u>이용하게</u> 한 경우 6. <u>회원으로</u> 등록한 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7. 센터의 물품을 <u>센터 직원의</u>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8. <u>회원 등록</u> 후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한 사실 <u>이</u>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u>회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u> 1년 이내에 회원으로 <u>재등록</u>할 수 없다.	토안에 해당 내용을 추가함 ○ (원안 제1항제3호) 회원으로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도 회원으로 등록한 개인정보가 허위인 경우에 포함되므로 해당 내용은 삭제함 ○ (원안 제1항제5호) 명의를 대출했다는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제6조(수수료등의 기준) ① 시장은 센터의 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 사용료, 연회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u> <u>② 수수료, 사용료, 연회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u> <u>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수수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유료로 제공되는 센터의 서비스 및 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u> <u>1. 수수료 및 사용료 : 이용일 3일 전</u> <u>2. 연회비</u> <u>가. 회원으로 가입 또는 재가입할 때</u> <u>나. 제4조제3항에 따라 카드를 추가 발급할 때</u> <u>④ 대출물품의 사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대출자가 부담한다.</u>	<u>제6조(센터의 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연회비(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u> <u>1. 이용료: 이용일 3일 전</u> <u>2. 연회비</u> <u>가.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할 때</u> <u>나.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원증을 추가로 발급할 때</u>	○ (원안 제1항 수수료 관련) 장난감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것도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고, 시설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는 이용료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므로 수수료를 이용료로 수정함 ○ (원안 제1항 사용료 관련) 원안에서는 장난감도서관 등의 사용에 관해서는 이용료로, 다목적실 등의 사용에 관해서는 사용료로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장난감도서관 등의 사용이나 다목적실 등의 사용 모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 관계가 아니라 공공시설의 이용 관계에 해당하여 용어를 사용료와 이용료로 구별하여 사용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하 검토안에서는 “이용료”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함 ○ (원안 제3항 후단) 검토안 제1항에서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의 내용은 이와 중복되어 규정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 (원안 제4항) 장난감 도서관의 이용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별표 1 나목 비고로 이동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7조(수수료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사용료만 해당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등의 반환) ① 수수료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7조(이용료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등(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이용료를 말한다)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의 구성원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① 이용료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원안 제2항) 면제를 받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원안 제2항) 별표 2 비고로 이동하여 규정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개인이나 기관의 귀책에 따라 이용을 취소할 경우 이체 수수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부담한다. ③ 수수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의 신청) ① 센터의 다목적홀, 다목적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전월 1일부터 7일 전까지 예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 주관행사 2.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이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다목적홀 등의 이용 신청) ① 센터의 다목적홀, 다목적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1. 국가 또는 시 주관 행사 2.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이용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 원안 제1항에서는 이용일 7일 전까지 이용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원안 제3항에서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이용 신청이 취소된 시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게 하려면 이용일 7일 전까지 이용을 신청하게 하는 규정으로는 이용 신청이 불가능 하므로 이용 취소된 시설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려 한다면 이용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 취소된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이용 신청 기간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임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사용 목적이나 행사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목적홀, 다목적교육실 및 부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다목적홀 등의 이용 제한) 시장은 다목적홀, 다목적교육실 및 부대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행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의 신청 등) ① 체험놀이실 및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회원은 이용일로부터 1주일 전부터 이용시간 전까지, 기관회원은 이용일로부터 전월 3번째 월요일부터 3일 전까지 예약하여야 한다. ② 기관회원의 예약이 없는 경우 개인회원이 이용할 수 있다. ③ 체험놀이실 및 장난감도서관의 예약취소는 개인회원의 경우 이용시간 전까지, 기관회원의 경우 이용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장난감도서관 등의 이용) ①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이용일 1주일 전부터 이용시간 전까지 2. 기관회원: 이용일이 속한 달의 전달 세 번째 월요일부터 이용일 3일 전까지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의 이용 신청을 한 회원이 이용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이용	○ (원안 제2항) 지자체 확인 결과 원안 제2항은 별표 3의 기관회원 정원을 고려하여 해당 정원보다 기관회원의 이용 신청 수가 적은 경우 기관회원의 이용 정원에서 이용 신청 건수를 뺀 수만큼 개인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하므로 그에 맞게 조문표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해당 내용은 이용정원을 규정한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므로 검토안에 서 별표 3 비고로 이동하여 규정함 ○ (원안 제6항) 인솔자의 의미가 불명확함. 인솔자가 기관회원으로 가입한 기관에 소속된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④ <u>예약취소 없이 3회 이상 불참하는 회원은 그 때부터 회원기간 만료일까지 체험놀이실 및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제한한다.</u> 〈신 설〉 ⑤ <u>체험놀이실 및 장난감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정원은 별표 3과 같다.</u> ⑥ <u>영유아와 보호자(인솔자)는 체험놀이실 및 장난감도서관에 함께 입장하여야 한다.</u> ⑦ <u>회원은 입장 시 회원증 및 접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u> 제12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을 가진 자	<u>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u>개인회원: 이용시간 전까지</u> 2. <u>기관회원: 이용일 3일 전까지</u> ③ <u>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의 취소 없이 장난감도서관을 3회 이상 이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해당 일부터 회원기간 만료일까지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한다.</u> ④ <u>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의 취소 없이 체험놀이실을 3회 이상 이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체험놀이실 이용 제한에 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u> ⑤ <u>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의 이용시간 및 이용 정원은 별표 3과 같다.</u> ⑥ <u>영유아는 보호자나 인솔자와 함께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에 입장하여야 한다.</u> ⑦ <u>회원은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에 입장하는 경우 회원증 및 접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u> 제12조(장난감도서관 등의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	영유아를 인솔하여 온 기관 소속의 보육교사 등을 의미한다면 그러한 의미가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함 ○ (원안 제7항) 접수증은 시장이 발급하는 이용 신청에 대한 접수증으로 보이므로, 원안 제1항 다음에 접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원안 제4항) 지자체 확인 결과 예약취소 없이 3회 이상 불참한 회원에 대한 이용 제한은 장난감도서관과 체험놀이실 각각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하므로 장난감도서관과 체험놀이실 이용제한에 관한 내용을 두 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 지자체 확인 결과 원안의 내용은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의 이용 제한사유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나, 다른 센터의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에 맞게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음주자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제13조(대출 등)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대출 시 회원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출 가능한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 : 1회 장난감 2개(대형 1개, 소형 1개 또는 소형 2개), 월 6개 이내 2. 기관회원 : 1회 장난감 5개(대형 2개, 소형 3개), 월 10개 이내	2. 술을 마신 사람 3.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제13조(장난감의 대출 등)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장에게 장난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장난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대출 신청을 하려는 경우 회원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u>대리인은 000을 제시하여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장난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회원 가. 다음의 기준에 따라 1회 장난감 총 2개 이내 1) 소형 장난감 2개 이내 2) 대형 장난감 1개 이내 나. 1개월에 장난감 총 6개 이내 2. 기관회원 가. 다음의 기준에 따라 1회 장난감 총 5개 이내	○ (원안 제2항) 대리인이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제시하게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원안 제3항) 대형 장난감과 소형 장난감의 구별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원안 제7항) 지자체 확인 결과 원안의 내용은 대출된 장난감이 파손 등의 이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장난감이 수리될 때까지 반납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므로 그에 따라 조문을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④ 장난감도서관의 대출기간은 14일로 하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물품을 중복하여 대출할 수 없다. 1. 동일 물품을 이미 대출 중인 경우 2. 반납 후 4주 이내에 동일한 물품을 대출하는 경우 ⑥ 회원은 연체 또는 미반납 물품이 있을 경우 연체일수만큼 대출할 수 없다. ⑦ 대출물품이 수리 중일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반납) ① 회원은 직접 대출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대리인에게 위임	1) 대형 장난감 2개 이내 2) 소형 장난감 3개 이내 나. 1개월 장난감 총 10개 이내 ④ 회원이 장난감을 대출할 수 있는 기간(이하 “대출기간”이라 한다)은 14일로 하며, 대출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 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장난감과 동일한 장난감의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1. 대출 신청하려는 장난감과 동일한 장난감을 이미 대출 중인 경우 2. 반납한 장난감과 동일한 장난감을 반납 후 4주 이내에 대출하려는 경우 ⑥ 시장은 대출기간의 만료일까지 장난감을 반납하지 않은 회원에게 연체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난감을 대출하지 않는다. ⑦ 회원은 대출한 장난감이 파손 등의 사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장난감을 반납할 수 없다. 제14조(대출한 장난감의 반납)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한 장난감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할	○ (원안 제2항 단서) 검토안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은 규정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삭제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하여 대출물품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택배 등으로 반납할 수는 없다.</u> 제15조(연체) ① 연체 시 휴관일을 포함한 연체일 수만큼 대출물품 1개당 연체료 1,000원씩 부과된다. ② 대출물품의 일부 부속물을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로 보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6조(변상) 회원은 센터의 시설 및 자료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저명 또는 외부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이용자 등의 안전조치 의무) 이용자 등은	<u>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한 장난감을 반납할 수 있다.</u> 제15조(연체료) ① 시장은 회원이 대출기간의 만료일까지 장난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대출한 장난감의 일부 부속물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출한 장난감 1개당 1천원에 총 연체일수(휴관일을 포함한다)를 곱한 금액을 연체료로 부과한다. 〈삭 제〉 제16조(강사) 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저명 인사나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 시설 등의 훼손에 대한 변상 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므로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 ○ 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관하여는 검토안 제4조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시설의 이용·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u> <u>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u> <u>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u> <u>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부 칙</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u>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부 칙</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항의 센터 시설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에 규정하면 되므로 삭제함 ○ 상위법령은 별도의 규정 없이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조례에서 준용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함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경우, 시행규칙 등의 제정을 위하여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이 없는 경우, 원안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음

이용료등 세부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시간제보육실 등의 이용료등

종류	구분	이용료	연회비	비 고
가. 시간제 보육실	영유아	보 건 복 지 부 지 침 이 정한 금액	해당 없음	〈검토 의견〉 조례에서 행정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므로 “보건복지부지침이 정한 금액” 대신 이용료를 직접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여 규정할 것을 권고함
나. 장난감 도서관	개인회원	해당없음	- 개인회원 : 20,000원 - 기관회원 : 50,000원	대출한 장난감의 사용에 필요한 건 전지 등 소모품은 장난감을 대출한 자가 부담한다. (접수안 제6조제4항의 내용을 이동하여 규정함)
	기관회원	해당없음		
다. 체험놀이실	개인회원	해당없음	해당 없음	1회 이용시간은 60분으로 한다.
	기관회원	해당없음		
라. 육아지원 프로그램	개인회원	1회 10,000원 이하	해당 없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료비 및 교재비를 별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기관회원	1회 5,000원 이하		

2. 다목적 교육실 등의 이용료

구 분	단 위	이용료	비 고
가. 다목적 교육실	1회	50,000원	1.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 다목적 홀	1회	80,000원	
다. 냉·난방비	다목적 교육실 1시간	5,000원	〈검토의견〉 왼쪽 표에서 이용시간이 규정된 것은 냉·난방비와 무대조명 뿐이고, 다목적 교육실 및 다목적홀의 1회 이용 시 기준이 되는 이용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시간에 대한 계산이 어려워 보이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목적홀 1시간	20,000원	
라. 기본음향	1회 마이크 4개 (유선2, 무선2)	무료	
마. 유선마이크	개당/회	6,000원	
바. 무선마이크	개당/회	20,000원	
사. 무대조명	1시간	30,000원	
아. 빔프로젝트	1회	30,000원	

이용료등의 반환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별표 1 제1호의 이용료

구 분	반 환 금 액
이용 전	이용료 전액
이용 <u>이후</u>	반환 불가

2. 별표 1 제1호의 연회비

구 분	반 환 금 액
<u>회원 등록</u> 후 대출·이용 횟수가 없는 경우	연회비 전액
<u>회원 등록</u> 후 대출·이용 횟수가 1회인 경우	연회비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u>회원 등록</u> 후 대출·이용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반환 불가

3. 별표 1 제2호의 이용료 <검토의견> 별표 1 제1호의 이용료에 대해서도 아래의 반환사유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구 분	반 환 금 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u>불가항력적인</u> 사유로 시설의 <u>이용</u> 이 불가능한 경우	<u>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이용일수</u>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센터의 사정에 따라 <u>이용</u> 이 <u>취소되거나</u> <u>정지되는</u> 경우	<u>이용료</u> 전액
센터를 <u>이용하는 자</u> 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 <u>이용일</u>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u>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u>
센터를 <u>이용하는 자</u> 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 <u>이용일</u>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u>납부한 이용료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u> 1. 이용료의 100분의 10 2. <u>반환을 요청하는 날까지의 이용일수</u> 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개인이나 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계좌이체 수수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부담한다.(접수안 제8조제2항을 이동하여 규정)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 이용시간 및 이용정원

(제11조제5항 관련)

구분	이용시간	이용회원	이용정원
장난감도서관	10:30~11:30	기관회원	영유아 15명 (보육교사 는 포함하지 않는다)
	13:30~17:00	개인회원	<u>영유아 및 보호자를 합한 인원 15명</u>
체험놀이실	10:30~11:30	기관회원	영유아 30명 (보육교사 는 포함하지 않는다)
	13:30~14:30	개인회원	<u>영유아 및 보호자를 합한 인원 30명</u>
	15:00~16:00 16:30~17:30		

비고

1. 체험놀이실의 이용시간은 회차별 60분으로 운영한다.
2. 센터의 휴관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검토 의견〉 센터의 휴관일에 체험놀이실과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므로 삭제를 권고함
3.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회원의 이용신청이 기관회원의 이용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정원 수 만큼 개인회원이 이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안건명 : ○○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시 기획예산과(2018. 7. 18. 접수)

조례종류 : 자치조례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u>노인복지관</u>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시장은 「<u>노인복지법</u>」 제37조에 따라 ○○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u>노인복지관의</u>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노인복지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 노인복지관(이하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휴게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또는 면회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프로그램실(취미교육실) 6.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7. 이·미용실 8. 보육시설 9. 기타 노인 및 아동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3조(시설)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복지관에 설치할 수 있다. 1. 휴게실 2. 이·미용실 3. 보육시설 4. 그 밖에 <u>노인 및 아동의</u>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설) <u>시장은</u> 노인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복지관에 설치할 수 있다. 1. 휴게실 2. <u>이용실·미용실</u> 3. 보육시설 4. 그 밖에 <u>노인 및 아동의</u>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접수안 제4호)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자를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노인복지관에 아동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접수안 각 호) 각 호의 업무 중 일부 업무 내용이 불명확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1. 복지관운영 및 평생교육, 취미여가사업(사회교육사업) 2. 고용지원(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참여사업(자원봉사 및 실버인력뱅크) 3.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4.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5.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경로의 달) 기념행사 6. 아동·청소년 등 자라나는 2세를 위한 복지사업 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5호에서 규정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u>복지관 운영 및 평생교육, 취미여가사업(사회교육사업)</u> 2. <u>고용지원(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참여사업(자원봉사 및 실버인력뱅크)</u> 3. <u>재가노인복지사업 및 건강증진사업</u> 4. <u>경로당 운영 혁신사업</u> 5. <u>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경로의 달) 기념행사</u> 6. <u>아동·청소년 등 자라나는 2세를 위한 복지사업</u> 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제6호에서 규정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복지관 운영 2. 평생교육, 노인취미여가사업 등 사회교육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 고용지원 4. 자원봉사활동, 노인인력은행 등 노인사회참여사업 5.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노인건강증진사업 6. <u>경로당 운영 혁신사업</u> 7.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8. <u>아동·청소년 등 자라나는 2세를 위한 복지사업</u> 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제6호에 따른 복지관의 사업 10.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거나 다른 업무와의 관계가 모호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리하여 규정할 것을 권고함 ○ (접수안 제4호)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경로당을 노인복지관과 구별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노인복지관에서 다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까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현 행	개 정 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5조(운영·관리) ① 복지관은 ○○시	〈삭 제〉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 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생 략) ○ (접수안 제6호)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자를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접수안의 아동·청소년 등 자라나는 2세를 위한 복지사업은 노인복지관의 업무로서 적절해 보이지 않아 보이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의 교부) 시장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복지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복지관의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관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지역노인회 대표 및 주민대표 2. 후원자 대표 3. ○○시 소속 공무원 4. 기타 복지관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삭 제〉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관한 사항 2. 노인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복지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복지관 이용자의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복지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관내 지역의 노인·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복지관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금과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	〈삭 제〉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 일전까지 다음연도의 복지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할 때 2. 수탁자가 제9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삭 제〉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5.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이용)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시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및 아동으로 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0세 이상의 노인.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2. 13세 이하의 아동	제5조(이용대상자)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0세 이상의 노인.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2. 13세 이하의 아동	○ (접수안 제2호)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자를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13세 이하의 아동을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4조(이용료)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비용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제6조(이용료) ① 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제6조(이용료) ① 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한다. 1.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의	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 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삭제 <2011. 12. 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 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이용료는 이용료 수납운영 프로그램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이용료의 반환)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을 취소 또는 중단하고 이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이용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신청인이 이용 또는 수강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 전부 3.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취소하는	등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시설의 이용 또는 프로그램 개시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전액 2.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이용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관리 비용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 제7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시설의 이용이나 프로그램 시작 전일까지 이용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2. 이용자가 프로그램 시작일 이후 이용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한 일수의 이용료를 제외한 금액 3.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한 일수의 이용료를 제외한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경우 : 이용 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15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액 〈삭 제〉	○ 노인복지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고, –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위탁근거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하면 되므로 삭제함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

현 행	개 정 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복지관운영에 관하여	〈삭 제〉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지자체 확인 결과 최종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은 삭제되었다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u>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u>	<u>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u>	고 하므로 이를 반영함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다면, 시행규칙의 제정을 위하여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례의 전부개정 시 두는 일반

현 행	개 정 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복지관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적 경과조치의 표준문안에 따라 표현을 수정함 ○ (접수안 제2조제1항) 개정 전 조례와 비교할 때 이 조례에서 노인복지관의 명칭 등 노인복지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없고 검토안 제2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해당 경과조치는 규정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접수안과 같은 경과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접수안 제2조제2항 및) 지자체 확인결과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위탁근거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되어 있어 접수안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다고 하므로 이 조례

현 행	개 정 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 있는 자는 위탁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u>	〈삭 제〉	에서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성이 없어 보임. 따라 서, 접수안과 같은 경과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 해 보임

[별표]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제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시 노인복지관	○○시 △△읍 △△△△로 359
○○시 △△노인복지관	○○시 △△면 △△로 801-47
○○시 노인복지관분관행복공간	○○시 △△읍 △△△△1로236번길 23
○○시 △△△△노인복지관	○○시 △△동 △△2로 67

안건명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시 감사담당관(2018. 7. 27. 접수)

조례종류 : 위임조례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 법령 본칙의 조문 수가 많으면(통상 조문 수가 30조 이상인 경우)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으로 구분하기는 하나 이하 검토안에서는 조문 수가 30개 이하 이므로 장의 삭제를 권고함. 이하 같음. ○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에 따른 위임조례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함. ○ 원안 제1항은 당연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	다)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시의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삭 제〉 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능의 효과적인	근거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을 참고하여 자구를 수정함. ○ 자구를 수정함.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u> 제2장 센터의 운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정문화사업, 다문화가족지원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신 설〉	<u>수행에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u> 〈삭 제〉 제5조(조직) 〈삭 제〉 ①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장 외에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원안 제1항) 영 제3조제1항을 재기재한 것으로 삭제함. ○ (원안 제3항) 건강가정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제2항을 재기재한 것으로 삭제함. ○ 원안 제6조제1항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검토안과 같이 심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5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센터장 2. 센터이용자 대표 3. 센터 직원 대표 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당연직) 5. 후원자 대표 및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7.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 000 2. 000 제7조(위원회의 구성) <삭 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센터장,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또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별로 각각 2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가. 센터 이용자 대표 나. 센터 직원 대표 다. 지역주민 대표 라. 가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가정문제, 건강가정 또는 가족문화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 (원안 제1항) 검토안 제6조로 이동하여 규정함. ○ (원안 제2항) 위원회 구성을 항을 나누어 규정하고, 자구를 수정함. ○ (원안 제3항) 임기에 관한 사항은 조를 신설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한다. 〈삭 제〉 〈삭 제〉	하여 규정함. ○ (원안 제4항) 검토안 제11조로 이동하여 규정함. ○ (원안 제5항) 「○○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급하면 되므로 재기재할 실익이 없음.
〈신 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검토안 제9조 및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신 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원안 제6조제4항을 이동하여 규정함.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제12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	○ (원안 제1항 및 제2항) 각 항의 내용을 합쳐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서 규정함. ○ (원안 제3항)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사항은 「○○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집행하면 되므로 기재 실익이 없어 삭제함.
제8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하되,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제13조(센터의 위탁 운영)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원안 제1항 및 제2항)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재기재한 것으로 삭제함. ○ (검토안 제1항) 원안 제4항을 이동하여 규정함. ○ (검토안 제2항 및 제3항) 원안 제9조제2항을 이동하여 규정함.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협동조합</u>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 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장비와 비용을 시에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원안 제5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삭제함. ○ (원안 제1항) 「○○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을 재기재한 것으로 삭제함. ○ (원안 제2항) 검토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 (원안 제3항) 당연한 내용으로 필요 시 위탁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구를 수정함.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 및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센터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0조의 지휘·감독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재기재할 실익이 없음. ○ 센터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스스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타당하지 않고, - 위탁 시 위탁 비용에 관한 사항이라면, 「○○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따라 위탁 비용을 지급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함.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u>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삭 제〉	○ 원안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로, 센터의 설치·운영은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것으로 별도로 경과조치를 둘 필요성이 없음. - 또한, 센터 위탁에 관해서는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위탁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경과조치를 둘 필요성이 없음.

안전명 : ○○시 △△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시 △△구 기획예산과(2018. 9. 20. 접수)

조례종류 : 자치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구 <u>사회적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u>1명이 단독으로</u>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시 △△구 <u>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구의 사회로부터 <u>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u>한 사람이 홀로</u>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u>사회적 고립가구</u>”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u>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u>	○ 자구를 수정함. ○ 자구를 수정함. ○ 자구를 수정함. ○ 자구를 수정하고, 원안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순서를 변경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u>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구에 주소를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수립하여야 한다. 〈삭 제〉	○ 원안 제2조제5호에서만 나오므로 삭제함. ○ 제1조(목적규정)와의 유기적 연관성을 위하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함. ○ 원안 제4조는 검토안 제5조제1항에 통합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둔 1인 가구(거소지가 △△구로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u>고독사 예방</u>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u>예방계획</u>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u>고독사 예방</u>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u>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u>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u>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u> 4. <u>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구축</u>에 관한 사항 5. <u>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u>에 관한 사항 6. <u>지역사회 관심과 참여</u>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u>고독사 예방</u>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u>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u>(이하 “<u>사회적 고립등</u>”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u>사회적 고립등 예방계획</u>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u>사회적 고립등 예방</u>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u>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u> 3. <u>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u> 4. <u>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 사회 관심과 참여</u>에 관한 사항 5. <u>사회적 고립등 예방 교육 및 홍보</u> 〈삭 제〉 6. 그 밖에 <u>사회적 고립등 예방</u>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여 규정함. ○ 자구를 수정함. ○ 담당자와 확인 결과, 실태조사 및 현황,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 고립가구와 고독사 위험자 모두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자구를 수정함. ○ 원안 제5조제6호는 검토안 제4조제4호에 통합하여 규정함. ○ 원안 제7조를 검토안 제5조제1항에 통합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u> 2. <u>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u> 3. <u>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u> 4. <u>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u>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u>응급호출버튼</u>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① 구청장은 <u>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1인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u>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u>긴급 의료지원</u>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u>응급호출장치</u>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 원안 제4조를 검토안 제5조제1항에 통합하여 규정하되, 담당자와 확인 결과 적용범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 거주여부는 불문한다고 하므로 거소지 부분은 삭제하고, '세대' 외에 지원대상자에 '사람'이 포함되므로 이를 괄호에 삽입함. ○ 원안 제8조제2호 전단은 검토안 제5조제7호와 통합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u>ICT(정보통신기술), HAR(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u> 8. <u>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u> 9. <u>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u> 10. 그 밖에 <u>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u>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u>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Human activity recognition)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u> 8. <u>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u> 9. <u>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u> 10. 그 밖에 <u>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u>	○ 영문약자를 알기 쉽게 표현하되, 정보통신기술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이므로 영문 병기를 하지 않음. ○ 정부지원사업은 현재 없다고 하므로 삭제함. ○ 중복된 표현을 수정함. ○ 담당자와 확인 결과 지원시설은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고, 이를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함. ○ 담당자와 확인 결과 원안 제8조제3항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상대방은 검토안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탁자라고 하고, 「○○시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기재 실익이 없음. ○ 원안 제9조는 검토안 제5조제3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 원안 제8조제4항의「○○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규정실익이 없어 삭제함.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삭 제〉	○ 원안 제9조는 검토안 제5조제3항에 이동하여 규정함.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 원안 제10조제2항의 경우 「○○시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기재 실익이 없음.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원안 제10조제3항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 ○시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삭제함.

안건명 : ○○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시 감사법무담당관(2018. 7. 27. 접수)

조례종류 : 위임조례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업무 처리 및 장사시설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 규정을 준용하고 그	○○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 법령 본칙의 조문 수가 많으면 (통상 조문 수가 30조 이상인 경우)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으로 구분하기는 하나 이하 검토안에서는 조문 수가 30개 이하 이므로 장의 삭제를 권고함. 이하 같음. ○ (원안 각 호 외의 부분) 이 조례는 위임조례로 별도의 규정이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평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 후 봉분이나 묘비석을 설 치하지 않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을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 3.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설묘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5. “공동묘지”라 함은 이 조례시행 이전에 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관리하면서 일반주민에게 제공되	이외는 다음과 같다. 1. “<u>공설묘지</u>”란 시가 기존의 공동묘지 등을 재개발하여 <u>공원화된 묘역을 조성하여 일반 주민에게 제공하는 시설</u>을 말한다. 2. “<u>공동묘지</u>”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 묘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u>공설장사시설</u>”이란 <u>공설묘지 내에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시설</u>을 말한다. 4. “<u>개인봉안묘</u>”란 <u>화장한 유골의 유골함을 4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고 분묘의 형태로 조성된 묘지로 1기당 유골함 2구(합장) 이하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u>을 말한다. 5. “<u>가족봉안묘</u>”란 <u>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유골을 분묘의 형태로 된 묘지로 1기당 유골함</u>		없더라도 위임조례의 특성에 따라 상위법령의 정의규정이 조례안에 당연히 적용되므로 “법 제2조 규정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규정할 필요가 없음 ○ (원안 제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르면 공설묘지는 지자체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묘지를 의미하는데, 이 조례안에서의 공설묘지는 묘지뿐만 아니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모두 포함하여 조성하는 묘역을 의미하므로(원안 제9조) 그 용어를 “공설묘역”으로 수정하여 검토안 제6조에서 구체화하므로 이 규정은 삭제하여 정리함(공설묘지의 용어의 경우 법에 따른 “공설묘지”와의 개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설묘역”, “공설공원묘지” 등 적절한 용어 사용을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는 묘지를 말한다 6. “개인봉안묘”란 2구 이하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묘를 말한다 7. “가족봉안묘”란 3구 이상 24구 이하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묘를 말한다 8. “자연장지”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9. “가족자연장지”라 함은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사망자 의 골분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자연장지를 말한다 10. “봉안시설”이라 함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 다) 하는 시설을 말한다	<u>24구 이하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u> 6. <u>“봉안평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유골함을 4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고 그 위에 상석·비석 등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u> 7. <u>“가족자연장지”란 친족 관계인 사망자 골분을 일정구역 내에 함께 안치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자연장지를 말한다.</u> 8. <u>“안향정”이란 슬피공설묘지 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을 말한다.</u> 9. <u>“어성정”이란 △△공설묘지 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을 말한다.</u> 10. <u>“안치단”이란 봉안당(안향정, 어성정)에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u> 11. <u>“사용료”란 공설장사시설에 대하여 ○○시장(이하“시장”이라</u>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안 제2호) 원안 제4장(제29조부터 제36조까지)을 삭제하여 정리하였으므로 해당 정의 규정도 삭제함(해당 삭제사유는 공동묘지 관련 규정의 검토 의견 참조) ○ (원안 제3호) 검토안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용어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삭제함 ○ (원안 제4호, 제5호 및 제7호) “개인봉안묘”, “가족봉안묘” 및 “가족자연장지” 용어는 상위 법령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해당 용어를 조례에서 정의할 경우 “개인봉안묘”, “가족봉안묘” 및 “가족자연장지”의 개념을 부당하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우려가 있음 ○ (원안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검토안 별표 1로 옮겨 규정함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3조(시책방향)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시책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설묘지의 난립 방지 가. 국토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 가족, 종중(문종) 묘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공설 및 공동 묘지내에 분묘 설치를 유도한다 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의하지 않은 법인묘지, 법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은 묘역 또는 안치시설 등에 대한 점유권에 대한 금액을 말한다. 12. “관리비”란 공설장사시설에 대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에 묘역 내 제초·환경정비·안치시설 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 가족, 종중·문종 묘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공설 및 공동묘지 안에 분묘 설치를 유도 한다. 2.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 등의 중장기계획에 의하지 않은 법인묘지, 법인 봉안시설, 법인 화장시설, 법인 자연장지 및 법인 수목장림의 설치	〈삭 제〉	○ (원안 제11호 및 제12호) “사용료”, “관리비”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해당 용어를 조례에서 정의할 경우 “사용료”, “관리비”의 개념을 부당하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우려가 있음 ○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에서 지자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조례에서 다시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할 실익이 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인봉안시설, 법인 화장시설, 법 인자연 장지 및 법인수목장립 의 설치를 억제한다. 2. 화장의 확대 가. 시체 또는 유골은 화장 처리토 록 적극 권장하고 주민 인식전 환을 위한 교 육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나. 연차별 계획에 의한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수목장립의 적정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운 영으로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 한 기반을 조성한다.	를 억제한다. 3. 시체 또는 유골은 화장 처리토 록 적극 권장하고 주민 인식전 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4. 연차별 계획에 의한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립 의 적정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 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 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 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 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 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 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 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장사시설 수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시 장사시설수급 계획을 생활 권역별로 나누어 수립하고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	제4조(장사시설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 묘지 등 수 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안에 장 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	제2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삭 제>	○ 영 제4조의 제명으로 통일함 ○ (원안 제1항) 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보건복지부장 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 라 해당 지역의 묘지 등에 관 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도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로 확보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장사시설의 설치 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여야 한다.	<u>시행하여야 한다.</u>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 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묘지· 화장 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전문 연구 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상반되는 제1항은 삭제하여 정리함 ○ (원안 제3항) 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재 실익이 없음 ※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영 제4조 제10항에서 지역수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조례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5조(묘지의 일제조사) 시장은 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일제조사를 실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묘지의 일제조사) 시장은 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일제조사를 실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u>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u>	제3조(묘지의 일제 조사)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u>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u>	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지자 체장이 규칙 등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지역수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 자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설방안시설의 설치) 영 제18조 제1항 “별표3”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영 제15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별표2”의 설치장소 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설방안시설의 설치) ① 영 제18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1)나)에 따른 개인 또는 가족방안묘의 설치 장소에 관하여는 각각 영 별표 2 제1호라목2) 및 제2호바목2)를 준용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2)나)에 따른 종중 또는 문중방안묘의 설치 장소에 관하여는 영 별표 2 제3호바목2)를 준용한다.	○ 담당자 확인 결과, 영 별표 3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별표 3에 따른 개인 또는 가족방안묘, 종중 또는 문중방안묘의 설치 장소에 관해서 영 별표 2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함에 따라 이에 맞게 문구를 수정함 - 원칙적으로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는 없으나,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아 정하는 위임입법의 경우 그 위임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 위임한 상위법령과 동위의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 별표 3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도 동위의 영 별표 2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 제4항 제11호에 따른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u> 1. 시설 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침수 등 <u>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u> <u>제8조(분묘의 설치기간)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 제1항과 제2항에 준용하여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u>	<u>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u> 1. 묘지· 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설치 예정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침수 등 <u>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u> 〈삭 제〉	○ 담당자 확인 결과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지역이 있지 않고, 지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함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삭제하여 정리함 ○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재기재한 것으로 기재 실익이 없어 삭제함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장 공설장사시설 등의 설치와 관리	<u>여 연장하여야 한다.</u> 제2장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제9조(명칭 및 위치) 공설묘지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삭 제〉 제6조(공설묘역의 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묘 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공설묘역을 설치·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설묘역(이하 “공설묘역”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 원안 제2조제1호의 내용을 수정하여 옮겨 규정함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7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사시설수급 계획에 의하여 연차별로 공설묘지를 설치하여 일반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장, 봉안 및 자연장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설묘지내 묘지설치 가용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선진장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공설묘지내 묘지설치가 용 면적의 20 퍼센트 이상을 평분묘 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장사시설 등의 조성) 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의하여 연차별로 장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반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장, 봉안 및 자연장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설치 가용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시장은 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을 조성하였을 때에는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u>치 등은 별표 1과 같다.</u> 제7조(공설묘역의 조성) <삭 제> 시장은 화장, 봉안 및 자연장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u>공설묘역 내 묘지 설치 가용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구역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삭 제>	○ 지역수급계획에 따라 장사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계획의 특성상 당연한 내용으로 기재 실익이 없음 ○ 법 제13조제4항의 내용을 재기재한 것으로 기재 실익이 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8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책정) ① 시장이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을 토대로 심의·결정한다. 1. 토지매입가격 및 인근토지의 실거래 가격 2. 묘지 조성비용 3. 최근의 물가상승률 4. 분묘 설치비 5. 기타 부대비용 등 ② 관리비는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③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시 점유면적에는 관리사무실, 도로, 녹 지구역 등 공유면적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용료 등 책정기준) 시장은 <u>공설장사시설 등을 조성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을 토대로 심의·결정한다.</u> 1. 토지매입가격 및 인근토지의 실거래 가격 2. 공설묘지 등 조성비용 3.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리비 등 4. 최근의 물가상승률 5. 그 밖의 부대비용 등	〈삭 제〉	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사용료 등의 부과와 관련된 검토안 제13조제2항으로 옮겨 규정함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9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관리) ① 공설장사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되, 그 직급 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타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u>제13조(관리) 시장은 공설묘지 등을 조성하였을 경우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u>제15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 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삭 제〉 <u>제8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묘역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 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 공설묘지의 관리를 위한 인원, 직급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내부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조례로 기재할 사항이 아님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1조(사용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설묘지안에 시체(죽은 태아)를 매장하고자 하는 자 2. 공설묘지안에 봉안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다만, 개인봉안묘는 2구를, 가족 봉안묘는 24구를 초과할 수 없다 3. 공설 봉안당 안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4. 공설 자연장지 안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장소는 이미 그 사용허가한 장소에 차례로 허가하며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개장으로 인한 합장 및 봉안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야 한다.	한다.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④ 제1항제3호의 사용자가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화장 후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안함은 사용 자가 구입한다. 단, 봉안함의 무게는 2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사용자격)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설묘지는 △△읍·△△면 지역, △△공설묘지는 △△면 지역, △△공설 묘지는 △△면 지역, 남부권 공설묘지는 △△면 △△리, △△면 △△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다른장소에 매장된 유골을 공설	제3장 공설 장사시설 등의 사용 제16조(사용자의 범위 등) ① 공설묘지에 일반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 공설묘지”는 △△면에 사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1. “△△ 공설묘지”는 △△읍·△△	〈삭 제〉 제9조(공설묘역의 사용 등) ① 공설묘역의 일반분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가. 별표 1 제1호에 따른 △△ 공설묘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사망한 경우 나. 별표 1 제2호에 따른 △△ 공	○ 별표 1의 공설묘지 순서에 따라 △△ 공설묘지, △△ 공설묘지, △△△ 공설묘지, △△ 공설묘지 순으로 정리함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묘지내 시체 또는 유골과 합장하고자 하는 자 3. <삭제 2015.02.13.>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공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2. 시 관내에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무연유골포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u>면에 사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u> 4. “남부권 공설묘지”는 △△면 △△리, △△면 △△리에 사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3. “△△ 공설묘지”는 △△면에 사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5. 다른 장소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을 공설묘지의 기존 분묘에	<u>설묘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 △△읍 또는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사망한 경우</u> 다. 별표 1 제3호에 따른 남부권 공설묘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 △△면 △△리 또는 △△면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사망한 경우 라. 별표 1 제4호에 따른 △△ 공설묘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사망한 경우 2. 다른 장소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을 공설묘역의 일반분묘에 합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합장하고자 경우</u> 6.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② <u>공설묘지에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 공설묘지」의 “봉안평장”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u> 1. <u>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u> 2. <u>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무연유골 포함)을 화장하여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u> 3. <u>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또는 행려자</u> 4.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u>장하는 경우</u> 3. <u>그 밖에 일반분묘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② <u>공설묘역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삭제></u> 1. <u>○○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u> 2. <u>시 관할구역 묘지에서 유골을 개장하여 화장한 후 안치하려는 경우</u> 3. <u>시 관할구역에서 외국인 등 연고가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u> 4. <u>그 밖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 단서 부분은 검토안 제3항으로 옮겨 규정함 ○ 원안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내용과 원안 제22조제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3조(공설묘지의 사전매매 금지 등) ① 공설묘지에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매매, 양도, 대채 및 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2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행령 제25조제5호에 따른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7조제2항 봉안시설 구역 내에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사용계약의 경우 - 제7조제3항 평분묘 구역 내에 묘지 설치를 위한 사전사용계약의 경우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봉안평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무연 안치단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내용을 옮겨 규정함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4조(공설장사시설의 면적 등) ① 공설 장사시설의 1기당 설치면적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설장사시설내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내에 합장하고자 할 경우에도 1기당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설묘지내 기매장된 분묘에 다른 유골을 합장하는 경우 인접묘지를 훼손하거나 경계를 침범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분묘 등의 형태) ① 분묘 등은 시장이 정하는 형태와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가족봉안묘는 사용신청자가 선정하여야 한다. ② 분묘 및 봉안묘 앞에는 반드시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한 묘비나 표식 물을 세워야 하며, 그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봉안묘 자체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가족봉안묘의 관리) ① 가족봉안묘의 설치자는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용허가 신청시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관리인은 사용료 납부 및 봉안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관리인이 사망 및 기타사유로 변경될 경우에는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기간) ① 공설장사시설 등의 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30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허가는 사용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제17조(사용기간 등) ① 일반분묘와 봉안시설의 <u>사용기간은 15년 또는 30년으로 하고</u>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u>최초 계약일로부터 60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야 한다.</u> 다만, 사용기간	제10조(설치기간 등) ① 공설묘역의 일반분묘와 봉안시설의 <u>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며,</u> 연고자가 <u>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15년 또는 30년 단위로 한 차례만 설치기간을 연장</u>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없이 연장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고 봉안시설 내 유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절차를 이행한 후 유골을 산골처리 할 수 있다. ④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이용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마지막으로 봉안된 유골을 기준으로 45년간 이용할 수 있으나 최초 봉안된 유골을 기준으로 6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2조제2항에 의한 무연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u>연장은 15년 또는 30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u> ② <u>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u> 다만,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마지막으로 안치된 유골을 기준으로 <u>45년간 이용할 수 있으나</u> 최초 안치한 유골을 기준으로 6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u>무연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u> ④ <u>제1항에 의한 연장 허가신청은 기간만료 이전 4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u>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연장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고, 봉안시설의 유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준용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골을 산골처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② <u>공설묘역 자연장지의 설치기간은 45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u> 다만,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마지막으로 안치된 유골을 기준으로 45년간 설치할 수 있으나 최초 안치한 유골을 기준으로 6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삭 제〉	면 분묘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담당자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일반분묘와 봉안시설의 설치기간을 모두 30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15년 또는 30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함 ○ (원안 제3항) 영 제9조제1항을 재기재한 것으로 기재 실익이 없어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 (원안 제4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과 상위법령의 관련 규정을 재기재한 것으로 기재 실익이 없어 삭제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8조(사용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가 공설장사시설 등을 사용신청할 경우 시장은 제17조의 사용기간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 등을 최초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3. 기존 허가받은 장사시설에 합장	제11조(사용신청 등) ① 공설묘역의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공설묘역의 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등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 ○ (원안 제1항) 원안 제17조에서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사시설 등을 설치할 때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재 실익이 없음 － 따라서 관련 내용을 공설묘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용신청 규정으로 수정하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또는 가족봉안묘에 추가로 안치하는 자</u> ② <u>가족자연장지는 유골의 안치구수와 관계없이 2기용, 4기용으로 허가한다. 다만, 일시에 4기용 이상을 안치하고자 할 경우 짝수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u> ③ <u>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u> ④ <u>신청자의 주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삭 제〉 ② <u>공설묘역의 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한 사람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장사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u> ③ <u>공설묘역의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u>	여 정리함 ○ (원안 제2항) 별표 1로 옮겨 규정함 ○ 자구 수정 ○ 원안 제23조에서는 사용권의 승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장사시설의 경우 사용 신청 후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자와 무관하게 해당 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권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해서 담당자 확인 결과, 공설묘지 등의 사용을 신

현 행	개 정 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9조(장사시설 등 설치) ① <u>사용권자는 장사시설 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형태 및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u>	제12조(장사시설 등의 조성) ① <u>사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형태 및 구조로 장사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조성하여야 한다.</u>	청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장 60년 동안 장사시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청자 등의 사망, 주소지·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신청자를 찾지 못할 경우 유골 등의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승계와 관련된 규정을 둔 것으로 설명함에 따라 - 검토안 제11조제3항에서 원안 제23조의 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여 주소지, 이름,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시장에게 알리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정리함

현 행	개 정 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조성한 장사시설의 앞에는 안치자의 성명, 관리번호 등을 표기한 묘비 또는 표식물을 세워야 하며 그 규격과 설치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장사시설의 안치 방법) ① “일반분묘”는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위생적으로 처리 한 후 지면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매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봉안묘” 또는 “봉안평장”은 지면으로부터 4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유골함 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묻어야 하며 어떠한 유품도 매장할 수 없다. ③ “가족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고 개폐가 가능한 시설에 안치하여야 한다. ④ “봉안당”은 화장한 유골을 공중 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	② 조성한 장사시설의 앞에는 안치자의 성명, 관리번호 등을 표기한 묘비 또는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 장사시설의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서는 삭제하여 정리함 - 원안 제1항: 영 제7조제1호가목 - 원안 제2항: 영 제7조제1호나목 및 별표 1 제3호가목3) 등 - 원안 제3항: 영 별표 1 제3호가목3) - 원안 제4항: 영 별표 1 제3호다목1) 등 - 원안 제5항: 영 제8조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9조(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 등의 사용자는 사용허가시 “별표 3”에 정한 사용료 및 관리비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1항에 의거 연장사용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족자연장지를 사용하고자는 자는 실제 안치되는 위수에도 불구하고 4 위용, 6위용, 8위용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u>일정규격의 유골함을 사용하여 안치한다.</u> ⑤ “자연장(잔디)”은 <u>지면으로부터 4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흙과 혼합하여 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u> 제21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사용권자는 “별표2”에 정한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의 일반분묘·봉안시설 등에 합장하거나, 가족봉안묘에 추가로 안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13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부과 등)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을 토대로 사용료등을 결정한다. 1. 토지 매입 가격 및 인근토지의	○ 원안 제1항 단서의 내용은 별표 2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재 실익이 없음 ○ 원안 제12조의 내용을 옮겨 규정함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④ 제18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되는 기간의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은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8조의 사용권자가 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사시설을 전부 반납하는 경우 잔여 사용기간에 대해 “별표3” 과 같이 관리비를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분묘의 사용권자가 미사용한 묘지(가묘)를 불가피한 사유로 반환 할 경우 시장은 별도 반환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다. ④ 가족자연장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실제 안치하는 기수와 관계없이 사용허가 받은 기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실거래 가격 2. 공설묘역의 조성비용 3. 공설묘역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리비 4. 물가상승률 5. 그 밖의 부대비용 ③ 시장은 사용자가 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설묘역의 일반분묘 사용을 신청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분묘를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경우의 관리비 반환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 자구 수정 ○ 검토안 별표 2 비고로 옮겨 규정함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0조(사용료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설 장사시설 등의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봉안묘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2. 법 제12조 및 제23조에 따른 무연분묘 처리시에는 전액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 반액	제2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사용료 및 관리비를 전액 감면</u> 할 수 있다. 다만, <u>연고자가 없는 경우 안향정의 무연고 안치단에 안치하여야 한다.</u>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u>연고자가 없는 자가 사망한 경우.</u>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행려 사망자 3. <u>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무연고 분묘를 개장 후 화장하여 안치하는 경우</u> 4. 그 밖에 <u>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u>	〈삭 제〉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공설묘역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u>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u>연고자가 장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u> 2. <u>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사망하여 시에서 사용하는 경우</u> 3. <u>시에서 무연고 분묘를 개장 후 화장하여 안치하는 경우</u> 4. 그 밖에 <u>재난의 발생 등 특별한</u>	○ 별표 2의 사용자 부담란에 그 밖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재 실익이 없음 ○ 단서의 내용은 검토안 제9조제3항으로 옮겨 규정함 ○ 담당자 확인 결과, 원안 제1호의 경우 수급권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 등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여 시에서 장사하는 경우에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함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 한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u>사용료에 한하여 전액 감면</u> 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는 납부하 여야 한다. 1.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사용기 간이 만료되어 연장 신청을 하 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희생·공헌한 자 4. 「의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5. 공설묘지의 일반분묘 사용자가 개장하여 화장 후 자연장지 또 는 봉안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묘역 장사시 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설치기간을 연장 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하 여 사용하는 경우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 사자가 사용하는 경우 5. 공설묘역의 일반분묘를 개장하 여 화장한 후 자연장지 또는 봉 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1조(사용폐지신고) ① 공설묘지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반환할 때에는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관리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봉안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설봉안당에 안치한 유골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유골을 인도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은 별	③ 사용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사용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라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설묘역 사용 신청 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표3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u>제23조(사용권의 승계 등) ① 제18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 등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u>	〈삭 제〉	○ 사용권 승계 삭제와 관련해서는 원안 제18조제4항의 검토 의견 참조
제23조(허가의 취소) 공설장사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한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u>제24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u> <u>1.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또는 임대 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u>	〈삭 제〉	○ 이 조례안에서는 공설묘역의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는 허가과 달리 취소할 대상이 없어 취소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서 사용허가 취소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용허가한 장소에 10일 이내에 분묘 및 납골묘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4. 분묘의 형태를 1/3이상 손상하였을 때 5. 법령,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제18조 제1항의 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5. 사용권자가 허가 장소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반납하였을 경우 6. 일반분묘 및 봉안시설의 사용권자가 10일 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용권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준수사항과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8. 법 제11조에 따른 묘지의 일제 조사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 9. 그 밖에 사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 또한, 법 제27조 등에서는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개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분묘의 개장 절차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분묘의 형태가 일부 다른 경우 등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사용권의 취소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함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4조(부채 등의 비치) ① 시장은 묘지사용자와 안장된 사망자의 관계 등을 기 재한 묘적부와 묘적도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에 정한 장부이외에도 공설 장사시설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보조 장부를 사용할 수	<u>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③ <u>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연고자에게 60일 간의 기간 내에 원상복구 또는 개장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 ④ <u>제3항에 따른 개장 또는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법 제28조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u> ⑤ <u>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있다.	제25조(유골 등의 반환) ① <u>사용권자는 공설묘지에 안치된 분묘의 개장 또는 봉안시설의 유골에 대하여 인수를 요구 할 경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u>시장은 자연장지에 안치된 경우 골분 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유골함을 사용한 경우 반환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u> ③ <u>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용권자에게 그 유골을 인수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 ④ <u>제3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관련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u>	제15조(유골 등의 반환) ① <u>사용자는 공설묘역에 안치된 분묘의 개장 또는 봉안시설 유골의 인수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삭 제〉	○ (원안 제2항) 원안 제5항에서 유골 등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장지에 안치되어 분해가 가능한 유골함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유골을 반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임 ○ (원안 제3항 및 제4항)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라 처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유골 등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u>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장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u>사용권자가</u>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장사시설의 재사용) ① <u>시장은 제25조의 반환된 시설에 대하여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급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6조의 사용대상자에게 재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u> ② 제17조 제2항의 자연장지 사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장 및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u>요구를 한 자가</u> 부담하여야 한다. 〈삭 제〉	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하면서, 공설묘지 설치자는 연고자가 철거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묘지 등의 위치 및 장소 등을 연고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대해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등에 따라 집행하면 되므로 조례에 기재할 실익이 없음 ○ 담당자 확인 결과, 이 규정은 기존에 분묘 등을 사용한 자에게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재사용 허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한 분묘 등을 다시 정비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기간이 만료된 묘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제 정비 후 재사용 할 수 있다.</u> <u>제27조(금지행위 등) 공설묘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u> 1. 장사시설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및 <u>참배</u>를 방해하거나 <u>지장을 주는 행위</u> 3. <u>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u> 4. 안치된 봉안시설에 과도한 시설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6. <u>그 밖의</u>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u>제16조(금지행위 등) 공설묘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u> 1. 장사시설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및 <u>참배 등을 방해하거나 공설묘역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u> 3. <u>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u> 4. 안치된 봉안시설에 과도한 시설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6. <u>그 밖에</u>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함 - 기존 분묘를 정비하여 재사용할지는 공설묘역을 관리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하면 될 사안으로 조례에 기재할 실익이 없음

현 행	개 정 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제28조(원상복구 및 변상) 사용자 또는 시설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해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제14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묘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및 지방공기업에 위탁 관리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〇〇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u>	〈삭 제〉 <u>제17조(위탁운영) 시장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공설묘역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u> <u>1. 〇〇〇</u> <u>2. 〇〇〇</u> <u>3. 〇〇〇</u>	○ 시설의 원상복구와 변상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므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 상위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조문을 공설묘역과 관련된 규정 마지막으로 옮겨 규정함 ○ 법 제38조제3항에 따르면 ‘공설묘지 등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로 수탁대상 기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수탁기관을 이 조례에서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3장 공동묘지 설치와 관리 제25조(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제4장 공동묘지 설치와 관리 제29조(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삭 제〉 〈삭 제〉	구체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권고함 - 또한, 민간 위탁의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적용되므로 원안 제2항도 삭제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 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법 제7조에서는 누구든지 지자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장은 도시 주변이나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외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제26조(명칭 및 위치) 공동묘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27조(공동묘지 용도폐지) 공동묘지를 타 용도로 전환 또는 폐지시 대체 묘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u>시장은 도시 주변이나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외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u> <u>제30조(명칭 및 위치) 공동묘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u>	〈삭 제〉	체에서 설치·조성한 공설묘지 등이나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 확인 결과 공동묘지는 공설묘역과는 달리 시에서 설치·조성한 묘지가 아니라 시의 공유재산인 토지를 마을에서 임의로 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함 - 법적 근거 없이 조성된 공동묘지를 이 조례의 규율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공동묘지와 관련된 부분을 이 조례의 규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함(이하 같음)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상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관리) 공동묘지는 읍·면·동장이 행정재산으로써 관리 책임을 진다. 다만, ○○시 장사시설수급계획에 의한 재개발 예정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제31조(관리) 공동묘지는 읍·면·동장이 행정재산으로써 관리 책임을 진다. 다만, ○○시 장사시설수급계획에 의한 재개발 예정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제32조(사용신청) 공동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에게 매장신고서를 하여야 한다.</u> <u>제33조(묘지설치) ① 공동묘지 사용면적은 1기당 1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u> <u>② 합장일 경우 15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u> <u>③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묘지 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비석1개, 상석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설치비용은 사용자</u>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9조(사용료 등) 공동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무상으로 한다.	가 부담한다. 제34조(설치제한) ① 공동묘지 내 가 묘를 설치 할 수 없다. ② 공동묘지 내 가족 또는 종중묘지, 자연장지, 봉안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 제35조(사용료 등) 공동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무상으로 한다. 제36조(공동묘지의 용도폐지) 공동묘지를 타 용도로 전환 또는 폐지 할 경우 대체 묘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상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30조(공동묘지의 사용 및 관리 등) 공동묘지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봉안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설치와 관리 제31조(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 하기 위하여 공설 및 사설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립의 신설 또는 증 설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과 제 18조제1항의 “별표 3”에 따른 “그 밖에 지 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 한 장소”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제한지역 이외의 장소로 개인·가족·종중(문중)봉안 묘에만 적용한다. 제32조(공설화장시설 등의 관리·운영) ① 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 지 및 공설수목장립 은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운영하거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공설화장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장 보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신설〉</u>	〈삭제〉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〇〇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u>	○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검토안 부칙 제2조와 같이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종전 법령의 집행 전반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접수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신 설〉	제3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설묘역의 장사시 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사용료·관 리비 부과와 사용료·관리비 감면, 사용료·관리비 반환 기준 등에 관 하여는 제13조, 제14조,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종전의 「○○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 례」 별표 3에 따르면 △△ 공설 묘지의 일반분묘의 경우 m²당 76,100원을 부과하는 등 개정 안의 사용료 부과 금액과 일부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종전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관리비 면제에 대해서는 별도 의 규정이 없으나 개정안에서 는 관리비 면제에 해당하는 내용도 신설되었고,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도 종전의 대 상과 일부 변경이 있는 것으 로 보이므로 사용료 등과 관 련된 내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별표 1]

공설묘역의 명칭 및 위치 등(제6조제2항 관련)

1. 공설묘지 (4개소)

명 칭	위 치	묘역의 종류	비 고
1. △△ 공설묘지	△△면 △△리 산50 일원	가. 일반분묘 (합장 가능) 나. 개인봉안묘 (합장 가능) 다. 가족봉안묘 (1기당 16구용) 라. 봉안평장 (합장 가능) 마. 자연장(잔디) 1) 개인 (합장 가능) 2) 가족 (검토 중) 바. 어성정 (개인 안치단) (부부 안치단)	
2. △△ 공설묘지	△△면 △△리 367-2 일원	가. 일반분묘 (합장 가능) 나. 가족봉안묘 (1기당 24구용) 다. 봉안평장 (합장 가능) 라. 안향정 (개인 안치단) (무연 안치단)	
3. △△ 공설묘지	△△면 △△리 산12-1 △△면 △△리 산19	가. 일반분묘 (합장 가능) 나. 자연장(잔디) 1) 개인 (합장 가능) 2) 가족 (2구, 4구, 6구)	
4. △△ 공설묘지	△△면 △△리 산146-1 일원	가. 일반분묘 (합장 가능) 나. 가족봉안묘 (1기당 24구용)	

※ 비고

1. “봉안평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유골함을 묻고 그 위에 상석·비석 등을 지상에 돌출되지 않게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성정” 및 “안향정”이란 각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을 말한다.
3. “안치단”이란 봉안당에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가족자연장지는 유골의 안치구수와 관계없이 2구, 4구, 6구 등의 단위로 사용한다.

2. 공설봉안당 (2개소)

명 칭	위 치	안치유형	비 고
가. 안향정	△△면 △△리 367-3	▶개인 안치단 ▶무연 안치단	
나. 어성정	△△면 △△리 503-7	▶개인 안치단 ▶부부 안치단	

[별표 2]

공설장사시설 등의공설묘역의 사용료등(제13조제1항 관련)

□ 공설묘지 (4개소)

(단위: 원)

명 칭	구분	단위	계약 기간	계약(납부)금액			사용자 부담
				계	사용료	관리비	
1. △△ 공설묘지	일 반 묘	1기당	30년	1,488,000	764,800	723,200	※ 실버적용 ▶ 인건비 등 - 분묘 등 설치비용 ▶ 시설 구입 및 설치 - 비석, 돌레석, 상석 - 와비(봉안평장) ▶ 자연장의 개별표지석 ▶ 그 밖에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15년	1,126,400	764,800	361,600	
	개 인 봉안묘	1기당	30년	892,800	458,880	433,920	
			15년	675,840	458,880	216,960	
	가 족 봉안묘	1기당 (16구용)	30년	3,720,000	1,912,000	1,808,000	
			15년	2,816,000	1,912,000	904,000	
	봉안평장 (와비)	1기당	30년	380,000	180,000	210,000	
	자연장 (잔디)	1기당	45년	250,000	134,000	116,000	
	여성 정	개인	30년	509,200	345,600	163,600	▶ 유골함 구입비
			15년	427,400	345,600	81,800	
		부부	30년	854,900	691,300	163,600	
			15년	773,100	691,300	81,800	
2. △△ 공설묘지	일 반 묘	1기당	30년	1,449,600	659,200	790,400	▶ 유골함 구입비
			15년	1,044,400	659,200	395,200	
	가 족 봉안묘	1기당 (24구용)	30년	5,436,000	2,472,000	2,964,000	
			15년	3,954,000	2,472,000	1,482,000	
	봉안평장 (와비)	1기당	30년	380,000	170,000	210,000	
	안향 정	개인	30년	268,700	180,900	87,800	▶ 유골함 구입비
		무연	10년	182,100	138,200	43,900	
3. △△ 공설묘지	일 반 묘	1기당	30년	2,728,800	1,620,000	1,108,800	▶ 유골함 구입비
			15년	2,174,400	1,620,000	554,400	
	자연장 (잔디)	1기당	45년	257,200	153,300	103,900	
4. △△ 공설묘지	일 반 묘	1기당	30년	1,204,800	659,200	545,600	▶ 유골함 구입비
			15년	932,000	659,200	272,800	
	가 족 봉안묘	1기당 (24구용)	30년	4,518,000	2,472,000	2,046,000	
			15년	3,495,000	2,472,000	1,023,000	

※ 비고

1. 기존의 안치장소에 합장하거나 추가로 안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2. 가족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는 실제 안치구수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안치구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 단) 1. 기존 안치장소에 “합장”할 경우에는 계약(납부)금액은 면제됨(설치비 등 제외)
 2. 계약기간이 만료 후 연장 계약할 경우 “관리비”만 납부함.

㉠ 공설 봉안당 (2개소)

명 칭	구분	단위	계약 기간	계약(납부)금액			사용자 부담
				계	사용료	관리비	
여성정	개인	1구	30년	509,200	345,600	163,600	유골함 구입비
			15년	427,400	345,600	81,800	
	부부	2구	30년	854,900	691,300	163,600	
			15년	773,100	691,300	81,800	
안향정	개인	1구	30년	268,700	180,900	87,800	유골함 구입비
			15년	224,800	180,900	43,900	
	무연	1구	10년	182,100	138,200	43,900	

단) 계약기간이 만료 후 연장 계약할 경우 “관리비”만 납부함.

[별표 3]

장사시설 “관리비 반환 기준(제13조제3항 관련)

□ 반환시설 : 일반분묘, 봉안묘, 봉안평장, 봉안당(무연고 안치단 “제외”)

□ 반환항목 : 관리비 (단, 사용료는 제외)

□ 환급기준

1. 15년 사용자의 경우

단계별	사용기간	환급률(%)	비 고
1	1년 미만	80	
2	1년 이상 ~ 3년 미만	70	
3	3년 이상 ~ 5년 미만	60	
4	5년 이상 ~ 7년 미만	50	
5	7년 이상 ~ 9년 미만	40	
6	9년 이상 ~ 11년 미만	30	
7	11년 이상 ~ 13년 미만	20	
8	13년 이상 ~	0	

2. 30년 사용자의 경우

단계별	사용기간	환급률(%)	비고
1	1년 미만	80	
2	1년 이상 ~ 3년 미만	75	
3	3년 이상 ~ 5년 미만	70	
4	5년 이상 ~ 7년 미만	65	
5	7년 이상 ~ 9년 미만	60	
6	9년 이상 ~ 11년 미만	55	
7	11년 이상 ~ 13년 미만	50	
8	13년 이상 ~ 15년 미만	45	
9	15년 이상 ~ 17년 미만	40	
10	17년 이상 ~ 19년 미만	35	
11	19년 이상 ~ 21년 미만	30	
12	21년 이상 ~ 23년 미만	25	
13	23년 이상 ~ 25년 미만	20	
14	25년 이상 ~	0	

[별표 4]

공동묘지 명칭 및 위치(제30조 관련)

□ 공동묘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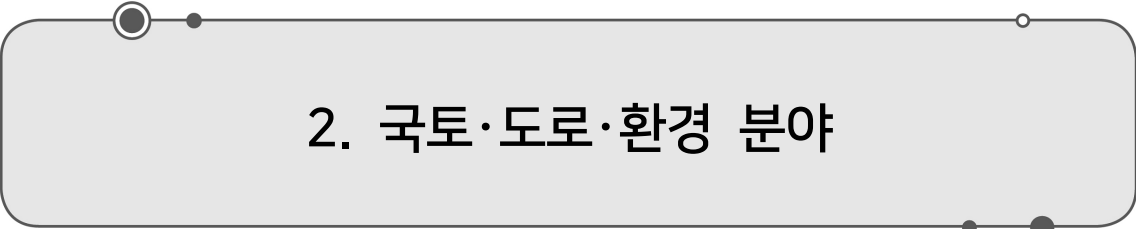
(단위:㎡)

읍면동	공동묘지명	소 재 자		지목	당초	비 고
		라	지번			
	총 계	51개소 71필자			1,198,585	
	소 계	4개소 5필자			71,186	
△△ (4)	1. △△라	△△라	산12	묘지	7,735	
	2. △△라	△△라	산110	임야	9,993	배수지 진입로 편입 제외(2,813㎡)
	3. △△라	△△라	산77	묘지	27,967	
	4. △△라	△△라	산21	묘지	25,063	
		△△라	산21-2	묘지	428	
	소 계	7개소 9필자			108,222	
△△ (7)	5. △△라	△△라	산26	묘지	8,926	
	6. △△라	△△라	산157	묘지	10,909	
	7. △△라	△△라	산54-1	묘지	15,669	
		△△라	산2-1	묘지	8,231	
	8. △△라	△△라	산15	묘지	11,077	
		△△라	산5	묘지	9,080	
	9. △△라	△△라	산66	묘지	14,380	
	10. △△라	△△라	산68	묘지	18,942	
	11. △△라	△△라	산11-1	묘지	11,008	
	소 계	5개소 7필자			212,382	
△△ (5)	12. △△라	△△라	산5-1	묘지	45,086	
	13. △△라	△△라	산57	묘지	14,380	
		△△라	산58	묘지	12,298	
	14. △△라	△△라	산111	묘지	27,857	
	15. △△라	△△라	산2-1	묘지	46,116	
		△△라	산3-1	임야	43,934	
	16. △△라	△△라	산134	임야	22,711	

읍면동	공동묘지명	소 — 재 — 자		지목	당초	비 — 고
		라	지번			
△△ (6)	소 — 계	6개소 — 10필자			91,117	
	17. △△라	△△라	산3	묘자	13,078	
		△△라	산274-2	묘자	17,455	
	18. △△라	△△라	산4-1	묘자	15,570	
	19. △△라	△△라	산46	묘자	16,562	
		△△라	산145-3	임야	8,926	
	20. △△라	△△라	산4	묘자	4,661	
	21. △△라	△△라	370-37	묘자	3,119	당초 : 산7
		“	370-59	묘자	2,931	
	22. △△라	△△라	475-2	묘자	8,112	
		△△라	475-6	임야	703	
△△ (5)	소 — 계	5개소 — 5필자			108,855	
	23. △△라	△△라	산16	묘자	32,033	
	24. △△라	△△라	산5	묘자	31,008	
	25. △△라	△△라	214-2	묘자	14,277	
	26. △△라	△△라	산21	묘자	15,669	
	27. △△라	△△라	산59	묘자	15,868	
△△ (5)	소 — 계	5개소 — 5필자			72,794	
	28. △△라	△△라	산113	묘자	16,761	
	29. △△라	△△라	산171	묘자	18,446	
	30. △△라	△△라	산95-1	묘자	8,529	
	31. △△라	△△라	산107	묘자	18,248	
	32. △△라	△△라	산97	묘자	10,810	

읍면동	공동묘지명	소—재—자		지목	당 초	바 고
		라	지번			
△△ (5)	소 계	5개소 6필자			139,392	
	33. △△라	△△라	산36	묘지	30,744	
		△△라	산165	묘지	24,992	
	34. △△라	△△라	산64	묘지	26,430	
	35. △△라	△△라	산105	묘지	8,033	
	36. △△라	△△라	산221-1	묘지	14,876	
	37. △△라	△△라	산91	묘지	34,317	
△△ (2)	소 계	2개소 5필자			75,155	
	38. △△라	△△라	산26-1	묘지	19,612	
	39. △△라	△△라	산73	묘지	23,649	
		△△라	344-10	묘지	21,361	
		△△라	445-23	묘지	8,279	
		△△라	445-26	묘지	2,254	
△△ (3)	소 계	3개소 6필자			48,317	
	40. △△라	△△라	468-11	임야	1,775	
		△△라	465-2	묘지	6,069	
	41. △△라	△△라	161-4	묘지	1,167	
		△△라	산34-1	묘지	12,836	
		△△라	산34-4	묘지	4,652	
	42. △△라	△△라	산104	묘지	21,818	

읍면동	공동묘지명	소 — 재 — 자		지목	당 초	바 고
		라	지번			
△△ (5)	소 계	5개소 8필지			89,971	
	43. △△라	△△라	산41-1	묘지	10,413	
	44. △△라	△△라	367-1	묘지	1,127	
		△△라	367-2	묘지	344	
		△△라	산10-1	묘지	1,289	
		△△라	산10-4	묘지	38,876	
	45. △△라	△△라	산64	묘지	7,835	
	46. △△라	△△라	산73-1	묘지	11,405	
	47. △△라	△△라	산107	묘지	18,682	
○○2 (3)	소 계	3개소 4필지			151,343	
	48. △△동	△△동	산22	묘지	37,190	
	49. △△동	≠	산125-2	임야	92,732	
	50. △△동					
		△△동	산242-1	임야	19,735	
		≠	산242-3	임야	1,686	
○○3 (1)	소 계	1개소 1필지			29,851	
	51. △△동	△△동	산53-1	묘지	29,851	



2. 국토·도로·환경 분야

안전명 :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군 기획감사실 (2018. 3. 15. 접수)

조례종류 : 위임조례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 예보·경보,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	○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 외에 재난 예보·경보,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도 목적에 포함하여 정리함 ○ (원안 제1호) 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기반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 다목에 따른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	<u>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u>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u>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u> 3.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대처하는 <u>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u> 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u>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u> 5.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	<u>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u>	다시 기재할 실익이 없음 ○ (원안 제2호) 이 조례안에서 언급되지 않으므로 삭제 필요 ○ (원안 제3호) 이 조례의 위임 근거인 상위법에서는 별도의 정의 없이 “대응”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서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용어에 대해 “위임조례”에서 별도로 용어 정의를 하는 것은 조례에서 상위법령 용어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이 되어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은 삭제함 ○ (원안 제4호) 이 조례의 위임 근거인 상위법에서는 별도의 정의 없이 “복구” 용어를 사용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일까지 5.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준비단계”란 자연·인적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그 밖에 ○○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	<u>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이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u> <u>나.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u> <u>6.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u>		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서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용어에 대해 “위임조례”에서 별도로 용어 정의를 하는 것은 조례에서 상위법령 용어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이 되어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은 삭제함 ○ (원안 제5호) “비상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정의규정을 둘 필요 없이 검토안 별표 2의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임 ○ 원안 제6호는 법 제3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다시 기재할 실익이 없음 ○ 원안 제7호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에는 ○○군과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계 7.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8. “기반체계”란 국민생활과 국가·지역경제를 이루는 유·무형적 토대로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시설 및 체계를 말한다. 9. “예방단계”란 특별한 기반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유형별로 각종 기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0. “대비단계”란 기반재난 징후가	7.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u>법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u>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서 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거나 대책본부의 설치 및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신속한 초동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1. “대응단계”란 기반재난으로 인해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 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인원·장비·물자) 지원과 기반체계의 보호대책 마련 및 통합지원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2. “복구단계”란 핵심기반의 마비로부터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로서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이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책임기관에서 지정한 책임자를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될 때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가 아닌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u>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u>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u> <u>〈신 설〉</u>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u>장에게</u>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u>○○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u> 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u>재난 상황관리</u> 3. <u>장비·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u> 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u>장에</u>	○ 대책본부의 기능을 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정리함 ○ 재난의 상황관리와 응급조치 등은 별개의 내용이므로 호를 구분하여 정리함 ○ 대응·복구를 “수습”으로 약칭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일부 9월 30일까지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 8.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처리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 ○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본부장·부본부장·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 군수 2. 차 장: 부군수 3. 통제관: 재난안전실장 4.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 외에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차장: 부군수 2. 통제관: 재난안전실장 3.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	○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는 것은 법 제1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는 나머지 직위에 대한 사항만 규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③ 부분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통제관은 ○○군 소속 공무원 중 자연·인적재난 또는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부분부장을 보좌한다. ⑤ 담당관은 ○○군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법 제19조에 따라 대책 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 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 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기반재난 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⑦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다만, 해당부서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5. 실무반: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 ②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하는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다만, 해당 부서의 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실무반은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수습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법 제14조 등을 참조하여 별도의 항으로 정리함 ○ 법 제17조에 따르면 대책본부가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뿐이므로, 법률에 맞추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는 인력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의 부분부장·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 장: 본부장 보좌 3. 통제관: 재난상황관리, 수습 및 행정 지원업무 등의 총괄, 차장 보좌 4. 담당관: 재난 및 수습업무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1.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 2. 통제관: 차장 보좌, 재난상황관리, 수습 및 행정 지원업무 등 총괄 3.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및 실무반 임무 총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대책본부장의 임무는 법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여 정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6조(위임전결) ① 본부장, 부분부장,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인적재난 관련 : 별표 1 2. 기반재난관련 : 별표 2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 사무의 위임규칙」을 준용한다.	5. 실무반: <u>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u>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u>별표 2</u>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u>본부장</u>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u>그 직</u>무를 대행한다.	4. 실무반: <u>재난의 수습</u>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u>별표 1</u>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u>대책본부장</u>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u>직</u>무를 대행한다.	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u>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u> ○ 원안 별표 1에서는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 별표 1은 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8조제2항제2호로 옮겨 규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해야 하므로 삭제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 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 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기반 재난단계별로 실무반을 편성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본부장이</u>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신설>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대책본부장</u>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u>별표 2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u>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대책본부의 편성기준과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 편성기준 가. 자연재난 발생 시: 별표 3 나. 사회재난 발생 시: 별표 4 2.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 별표 5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u>재난분야 위기관리</u>	○ 원안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비상단계의 기준을 별도 항을 신설하여 운영기준으로 규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실무반구성은 별표 5,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③ 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 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	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	○ 원안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항으로 규정함 ○ 법 제17조에 따르면 대책본부가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뿐이므로, 원안의 관계기관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수정함(이하 검토안 제10조에서 같음)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에 따라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	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및 수습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3. 해당 <u>재난 관련</u>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u>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	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의 수습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3. 해당 <u>재난과 관련된</u>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u>대책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u>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u>대책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	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u>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하는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4조)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u>본부장에게</u>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u>본부장이</u>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u>본부장은</u>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u>본부장은</u>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u>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u>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u>대책본부장에게</u>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u>대책본부장이</u>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u>대책본부장은</u>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u>대책본부장은</u>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u>않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u>	○ 원안 제2항은 검토안 제4조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삭제하여 정리함 ○ “파견 직원”을 앞의 용어 표현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③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군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자연·인적재난발생시 법 제50조에 따른 ○○군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⑤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 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읍·면 또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은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u>파견 인력</u>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u>대책본부장</u>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u>파견근무 대상자</u>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과 통일하여 “파견근무자”로 규정함 ○ “파견 인력”을 앞의 용어 표현과 통일하여 “파견근무 대상자”로 규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 법 제 15조제5항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본부장은 기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u>훈련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u>본부장이</u> 정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u>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u>의 의장은 <u>본부장이</u> 되고, <u>부의장은 차장이</u>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통제관 2. 담당관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u>훈련에</u> 필요한 사항은 <u>대책본부장이</u> 정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u>○○군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u>의 의장은 <u>대책본부장이</u> 되며, <u>부의장은 대책본부 차장이</u>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 통제관 2. 대책본부 담당관 3.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군 관할 구역 내의 관계 기관	○ 자구 수정 ○ 원안 제14조제2항제3호에서는 관할 소방서장을 대책본부회의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4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담당급 공무원이 된다.</u>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 장 나. 관련 기관의 공무원 중 재난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u>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대책본부회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에서 관내기관 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조례는 ○○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자치법규이고, 관할 소방서장은 ○○군의 사무가 아닌 ○○도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조례안에서 대책본부회의의 당연직 위원으로 관할 소방서장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법제처 2014. 9. 26. 회신 14-0168 의견 제시 사례). -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들어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까지를 막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5조(○○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u>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u>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u>	<u>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u> ②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u>회의를 긴급히 소집할</u>	군 관할 구역 내의 관계 기관의 장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원안 제14조제2항제5호) 대책본부 위원으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으나, 원안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른 공무원을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책본부의 위원은 공무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계 기관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함 ○ 자구를 수정함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하지 아니하다.</u> ③ <u>본부장은</u> 필요한 경우 회의안전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u>본부장은</u>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u>배석시켜</u>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u>전문가</u>를 참석시켜 <u>필요한</u>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u>본부장은</u>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	<u>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u> ③ <u>대책본부회의 의장은</u> 필요한 경우 회의안전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u>대책본부회의 의장은</u>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u>참석하게 하여</u>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u>전문가에게</u> <u>필요한</u>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u>대책본부회의 의장은</u>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u>대책본부회의 의장은</u>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	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u>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u>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u>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u>운영에</u>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의장이 정한다. 〈삭 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의 내용을 재기재한 것이므로 삭제 를 권고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본부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반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u>본부장</u>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u>본부장</u>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u>수행하여야</u> 한다.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u>대책본부장</u>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u>그 결과를</u>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u>대책본부장</u>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u>하여야</u> 한다.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 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인력 및 특수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삭제>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17조제1항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청 권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안 제1항과 같이 조례에 다시 기재할 실익이 없음 ○ “지역자율방재단”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조직이 아니므로, “민간단체 등”으로 규정함
제19조(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 본부장은 기반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	<삭제>	○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내용을 재기재하고 있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u>관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② <u>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u> <u>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u> <u>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u>	<u>제17조(정보공유·협조체계의 구축) 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u> <u>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u>	○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다음에 위치하도록 조문을 옮김 ○ 단순히 재난수습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인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검토안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 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u>도 재난안전대책본부</u> 및 <u>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u>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군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 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u>○○도 재난안전대책본부</u> 및 <u>○○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u>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군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	에서는 재난수습 및 홍보 등으로 그 목적을 규정함) ○ 검토안 제3조제8호에서 약칭한 사항을 반영함 ○ 법에서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제34조의5)이 재난예보·경보 규정(제38조 등)보다 앞에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도 해당 조문의 위치를 재난예보·경보 앞으로 이동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u>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u>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u>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u>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u>본부장</u> 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u>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u>대책본부장</u> 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 원안 제2항은 법 제38조제4항의 내용을 재기재하고 있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제21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제20조(재난 예보·경보의 <u>통보</u>) 〈삭	○ 원안 제1항의 재난 예보·경보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 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 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 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① <u>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u> ② <u>군수가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u> ③ <u>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제> ① <u>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u> ② <u>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권한은 법 제38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재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상위법령에서 위험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위임한 사항이 없고, 다른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을 군수가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⑤ 본부장은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책본부장, ○○도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 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 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 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로 보고하고, 인적 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재난관리시스템과 전화통신문, 팩시밀리, 그 밖에 통신수단을 이용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재난관리시스템.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통신문, 팩시밀리와 그 밖에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 라. 보고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재난상황실장에게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상황실장은 전라남도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난상황실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 체계와 관련된 지역 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관련사항이 국가·지역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 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 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이용할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한다. 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에 따라 본 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통보 : 별지 제2호 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 대책본부 및 관계기관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반보호총괄관은 제4조제4항에 따른 통제관을 겸임하며, 다음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기반체계 위기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도 국가기반보호 상황실 및 관계기관간 연계업무 총괄 3. 관계기관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장성군의 담당요원간 및 장성군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도 국가기반보호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창구 역할 4. 기반보호관련 ○○군안전관리계획의 ○○군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 5. ○○군에 설치된 대책 본부 구성·운영 주도 6.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 관리)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① 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장은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남도 국가기반보호상황실·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 관리) ① 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재난상황실의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도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필요시 재난 상황실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도 국가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 관리) ① 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책 본부 재난상황 실직원과 지역재난 관리책 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하여 통합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의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그 밖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 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반보호 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 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 우 본부장은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하여 ○○군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고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 관리) ① 제2조제12호에 따른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면 재난상황실을 예방단계로 전환하고 관계 기관의 관계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본부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 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21조에 따라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부칙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가 정하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매년 12월 1일부터)”를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동절기 자연재난대책 기간(매년 11월 15일부터)”로 한다.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다른 조례 개정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함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평생교육센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총무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재난안전실
4.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총무과
5.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다.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라. 풍수해 · 지진 · 화산 · 낙뢰 · 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 는 재난 및 사고	재난안전실
6.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과
7.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농업재해 나. 저수지 및 댐 붕괴 사고	농업기술센터 재난안전실
8.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전력 사고 라.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마. 위험물 사고	경제교통과
9.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10.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황사	환경위생과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11.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고용투자정책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12.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육상화물운송 사고 바. 항공기 사고 사.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재난안전실 경제교통과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민원봉사과
13.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방사능 누출 사고	재난안전실
14. 문화재청	가. 문화재 사고	문화관광과
15.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편백과
16. 소방청	가. 화재·위험물 사고	재난안전실
17. <u>카타그 밖의 기관</u>	가. 군 청사 사고	재무과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제8조제1항별표 5 및 별표 6 관련)

구 분			비상단계 기준
1.	가. 풍수해 (태풍·호우·대설)	1) 비상 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1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3개 이상의 시·군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경우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안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 및 화산	1) 비상 단계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 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 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안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안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가 운영되는 경우 다.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제2항제1호가목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군 비상단계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실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4+α명
			반	장	방재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3명)	· 재난상황 관리반 3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2) 협업 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위생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재난수습 주관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교통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재난안전실
				아) 교통대책반	· 경제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 주민복지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이 협업기능반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를 의미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하 같음**)

나. 비상1단계

<u>대책본부장</u>	군수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실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7+\alpha+\beta$ 명	
	반 장	방재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6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3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3명 -재난안전실·재난담당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1명)	· <u>재난수습 주관부서</u> 직원 1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1명)	· <u>재난수습 주관부서</u> 직원 1명
		라) 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2) 협업 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위생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u>재난수습 주관부서</u>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기능복구반	· 경제교통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재난안전실
		아) 교통대책반	· 경제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주민복지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서
	<u>지역재난관리</u> 책임기관(β)		· ○○경찰서, ○○소방서, 한국농어촌 공사○○지사, 한국전력공사○○지사, KT○○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양여나머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대책본부장	군수		
차장	부군수		
통제관	재난안전실장		
담당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무반	인원	총 $12+\alpha+\beta$ 명	
	반장	방재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11+\alpha$ 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4명)	· 재난상황관리반 4명 - 재난안전실 재난담당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u>재난수습 주관부서</u> 직원 1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4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u>재난수습 주관부서</u> 직원 3명
		라) 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2) 협업 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위생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재난수습주관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교통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재난안전실
		아) 교통대책반	· 경제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주민복지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서
	<u>지역재난</u> 관리책임기관(β)		· ○○경찰서, ○○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전력공사○○지사, KTO○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왕여나머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군 비상단계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실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4+ α 명	
	반 장	방재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3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안전실 재난담당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2) 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위생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u>재난수습 주관부서</u>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교통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재난안전실
		아) 교통대책반	· 경제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자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 주민복지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대책본부장		군수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실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8+\alpha+\beta$ 명	
	반 장	방재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7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3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3명 - 재난안전실 재난담당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1명
		다) 상황보고서 작성팀 (2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마) 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2) 협업 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위생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재난수습 주관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교통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재난안전실
		아) 교통대책반	· 경제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 주민복지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서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 ○○경찰서, ○○소방서, 한국농어촌 공사○○지사, 한국전력공사○○지사, KT○○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양여나머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대책본부장		군수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실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1+α+β명	
	반 장	방재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	나)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4명)	· 재난상황관리반 4명 - 재난안전실 재난담당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마) 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2) 협업 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위생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재난수습 주관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교통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재난안전실
		아) 교통대책반	· 경제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 주민복지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서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β)		· ○○경찰서, ○○소방서, 한국농어촌 공사○○지사, 한국전력공사○○지 사, KTO○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 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나머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 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1. 편성기준

대책본부장		군수	
차장		부군수	
통제관		재난안전실장	
담당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무반	인원	총 $7+\alpha+\beta+\gamma$ 명	
	반장	재난 및 수습업무 담당	
	1)재난상황 총괄반 (6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 재난안전실 사회재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3명)	· 재난안전실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2명
	2) 협업 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위생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재난수습 주관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교통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재난안전실
		아) 교통대책반	· 경제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주민복지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육군제○○부대2대대, ○○경찰서, ○○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전력공사○○지사, KT○○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과· 소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제8조제2항제2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책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가) ○○ 군 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 개최(약칭 반영) 나) ○○군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구 분		업무와 역할
	평가팀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각 부서 및 읍면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 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및 읍면 복구현황 파악

구 분		업무와 역할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및 읍면 복구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및 읍면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 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도○○○○도 재난안전대 책본부 , ○○○○도 사고수습본부 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원 지 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 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구 분		업무와 역할
	9)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 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 · 국무총리 · 중앙대책본부장 · 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 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 · 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 · 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읍 · 면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군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 · 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 · 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 · 구급반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u>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u>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u>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는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u>)

대책본부 전결사항(제7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 무 내 용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현장관리관 파견			⊖	
		관계 기관 인력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회의록 작성	⊖			
6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안건명 : ○○시 △△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시 △△구 기획예산과 (2018. 3. 5. 접수)

조례종류 : 위임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구 도로점용공사장</u>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 호나목에서 위임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고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법 제18조에 따른 "구도" 를 말한다. 2.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할 때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	<u>○○시 △△구 도로 점용공사장</u>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 호나목 후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 (원안 제1호)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른 "위임조례"이므로, 법령에 정의된 용어를 조례에서 다시 정의할 필요 없음 ○ (원안 제2호)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 - 상위 법령에서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용어에 대해 "위임조례"에서 별도로 용어 정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u> <u>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u>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공사 <u>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u>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아 시행되는 △△구도의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u> <u>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전에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형태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삭제되어야 함 ○ 이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도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 ○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제12조의 사무위임에 따른 것인바, 이는 ○○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므로 기관위임사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되어야 함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의 제출 및 제출시점에 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서 명시하고 있어 이 조례에서는 그 외의 경우에 한정하여 교통소통대책의 제출 및 제출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u>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u>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u>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 시간의 조정, 우회안내 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u>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u>우회도로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의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u>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u>제4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① 구청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간대의 조정, 우회도로 안내 지점의 위치 변경 등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공사 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 ○시 △△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시 △△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이거나 차로의 구분이 없는 △△구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노선버스 통행도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된 교통소통대책</u>	○ (검토안 제2항) 원안 제9조의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 - 「도로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시에도 교통소통대책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이 이 조례에 따른 교통소통대책과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공사 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① 공사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외에도 「○○시 △△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함께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인바, 교통소통대책이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해당 위원회가 교통소통대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검토안 제3항) 원안 제12조의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 ○ (검토안 제2항)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검토안 제4조에 따른 검토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검토안 제4조를 준용하는 등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지 재검토가 필요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통대책 자문)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은 「○○시 △△구 교통안전정책 심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공사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u>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교통소통대책의 검토에 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u> 제6조(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대행)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의 이행 여부를 교통행정분야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 검토안 제4조제2항으로 조문 이동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의위원회」에 자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 공사의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약식절차로 자문회의를 대신 할 수 있다.</u> 1. 점용기간이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인 ▽▽▽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 2.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이거나 차로의 구분이 없는 구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노선버스 통행도로의 경우 제외)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 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공사	〈삭 제〉 〈삭 제〉 〈삭 제〉	○ 「도로법」 제96조에 따라 구청장은 같은 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은 조례에서는 규정할 필요가 없음 ○ 「도로법」 제96조에 따라 구청장은 같은 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은 조례에서는 규정할 필요가 없음 ○ (원안 제1항) 지자체 확인 결과 해당 조문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u>② 다만,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지 아니한다.</u>		검토안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므로 검토안 제4조제3항으로 이동하여 규정 ○ (원안 제2항) 공사 시행자가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그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에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가 포함될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해당 조문은 삭제를 권고함
<u>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u>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 이 조례는 제정조례로 종전 조례가 없으므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〇〇시 △△구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〇〇시 △△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〇〇시 △△구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〇〇시 △△구 도로 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검토에 관한 사항	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은 적절하지 않음.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되어 이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이 있고, 그 교통소통대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다시 제출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라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되어 이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은 검토 및 보완이 완료되어 구청장에게 최종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둘 수는 있을 것임 ○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구수정 내지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됨. - 따라서, 다른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동시에 진행하여 이 조례와 「〇〇시 △△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같은 날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함

안건명 : ○○시 △△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시 △△구 기획예산과 (2018. 8. 23. 접수)

조례종류 : 자치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u> 지역주민의 건강을 <u>보호하고</u>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	○○시 △△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u> 지역주민의 건강을 <u>보호하고</u>,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1.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2.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 자구 수정 ○ (원안 제1호) 2019. 2. 15.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의 정의 규정과 동일하게 자구를 수정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u>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산부 등을 말한다. 3.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 (원안 제2호) 이 조례안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용어가 한 번만 사용되고, 유아, 어린이 등 일부 계층을 예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로도 원안 제8조제1호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용어는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함 ○ (원안 제3호) 원안안 제6조에서만 대기오염 측정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므로 해당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풀어서 설명함 ○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 등에 대해 규율(원안 제1조 목적규정 참조)하는 조례안이므로 관련 규정에서 대기오염 등으로 규정한 부분은 미세먼지로 그 범
제3조(구청장의 책무)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u> 적극적으	제3조(구청장의 책무)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미세먼지로부터 ○○시 △△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u>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로 노력하여야 한다.		위를 명확히 하여 정리함(이하 같음)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4조제2항에는 지자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한 시책은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조례안에서 별도로 해당 시책을 발굴하도록 규정할 실익이 없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대기관리권역(大氣管理圈域)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기관리권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table> <tr> <td>지역구분</td> <td>지역범위</td> </tr> <tr> <td>서울특별시</td> <td>전지역</td> </tr> </table>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대기환경보전시책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조례에서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재기재할 실익이 없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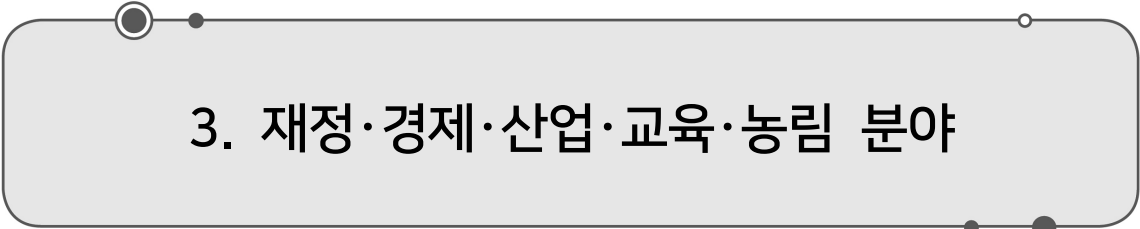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u>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u>적극 참여하여야 한다</u>. <u>제6조(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등)</u>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u>대기환경보전법</u>」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u>제4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u>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u>○○시 △△구(이하 “구”라 한다)</u>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u>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제5조(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등)</u> 구청장은 <u>미세먼지</u>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u>구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u>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구”를 약칭하여 정리함 ○ 참여 의무를 규정한 사항을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문구를 수정하여 정리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 측정망은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주체인데 이 조례에 따른 미세먼지 측정망은 구청장이 설치 주체이므로, 설치 주체가 다른 사안에 대하여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불필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주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제6조(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를 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의 내용, 기준 및 행동요령은 별표와 같다.	요하여 삭제함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 측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③ 구청장은 주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③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조치 내용 등을 신속하게 구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	○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원안과 같이 법인격을 달리 하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조례를 인용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별표 1 및 별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권고함 「○○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오존 경보는 "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구분하며, 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자구 수정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피해저감을 위한 지원</u> 2. <u>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u> <u>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로당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u> 2. <u>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삭 제〉 <u>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35조에서 지자체에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는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조례안에서는 삭제하여 정리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지역 주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부칙</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부</u> <u>칙</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재정·경제·산업·교육·농림 분야

안건명 : ○○시 △△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시 △△구 기획조정실 (2018. 4. 18. 접수)

조례종류 : 자치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구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시 △△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구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시 △△구 우수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구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시 △△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직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 검토안에서는 우수납세자와 성실납세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명을 수정함. ○ 자구를 수정함. ○ 담당자 확인 결과, △△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단체는 대상에 포함시킬 의도가 없다고 하여 제외하였으나, “단체”도 지방세 부과대상인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성실납세자는 구세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가. 법인 : 매년 구세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 인 자 나. 개인 : 매년 구세 납부액이 5백만원 이상 인 자 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에서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2월말까지 선정한 자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 △△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세 납부액, 기타 체납(국세 및 지방세),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을 말한다. 가. △△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다. 매년 구세 납부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1) 개인: 5백만원 2) 법인: 1천만원 2. “우수납세자”란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세 납부액, 구재정확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매년 2월 말까지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5년간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경력이 있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우수납세자에게 선정 결과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 사항을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내주어야 한다.	○ 검토안 제3조는 선정과 선정 통보에 대한 내용이므로 조 제목을 “선정 등”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자구를 수정함. ○ 원안 제5조제1항의 내용을 선정에 관한 규정으로 이동하여 검토안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2.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된 날부터 2년간 한번만 면제 3. 「〇〇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4. 납세자의 날 표창 및 표창패 수여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 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선정취소)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제4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우수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선정기준일부터 향후 3년간 면제 2.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선정기준일부터 향후 2년간 1회만 면제 3. 「〇〇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한정한다)의 주차요금을 선정기준일부터 1년간 면제 4. 납세자의 날에 표창 ② 구청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사문 발송 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 등에 참여 기회 부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편의 제5조(선정의 취소) 구청장은 우수납세자가 선정된 이후 국세 및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 우대 및 지원 사항의 기준일을 명확하게 함. ○ 담당자 확인 결과, 원안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가 면제 대상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함. ○ 담당자 확인 결과, 「〇〇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만 면제하므로 이에 맞춰 조문을 수정함. ○ 자구를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그 선정을 취소한다.</u> <u>제5조(대상자 관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u> <u>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u> <u>부 칙</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경우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제6조(관리대장 관리) 구청장은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 <u>부 칙</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구를 수정함.

(앞쪽)

〇〇시 △△구 로고	
우수납세자증	
성	명:
(법인명)	
주	소:
(소재지)	
유효기간:	
차량번호:	

(뒤쪽)

제 호	
우수납세자증	
「〇〇시 △△구 우수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〇〇시 △△구 우수납세자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〇〇시 △△구청장	직인
☐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은 관계인이 요구하면 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우수납세자 관리대장

등록 일자	선정 번호	유효 기간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리내용

안건명 : ○○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시 감사담당관 (2018. 7. 27. 접수)

조례종류 : 자치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u>지역산업</u>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u>관한</u>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이란 ○○시(이하“시”라 한다)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을 말한다. 2.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업관련 연구기관, 단체 및 사업자가 정부 또는 시의 지원이나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 <u>지역산업</u>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자동차부품, 기계, 금속 또는 식품 산업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 3. 바이오, 삼차원프린팅 또는 정보통신융합 산업 4. 그 밖에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	○ (원안 제2조제1항제1호) 원안 제3조를 이동하여 “지역산업” 정의에서 규정하도록 수정하고,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원안 제2조제1항제2호) 검토안 제5조제1항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함. ○ (원안 제2조제1항제3호) 정의규정이 없어도 충분히 의미를 알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정의할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3.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역산업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 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으로 한다. 1. 자동차부품, 기계·금속·뿌리, 식품 등 지역주력산업 2. 바이오, ICT융합, 3D프린팅, 그린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산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등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삭 제〉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필요가 없음. ○ (원안 제2조제2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서 정의된 용어가 검토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함. ○ 검토안 제2조로 이동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8조(적용범위) <u>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u>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u>국공립 연구기관</u> 2. <u>정부나 ○○○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u>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 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u>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u> 2. <u>지역산업 집적지 조성·관리</u> 3. <u>지역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u> 4. <u>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u> 5. <u>지역산업 관련 창업 교육</u> 6. <u>지역산업 관련 판매 촉진 지원, 시장조사, 전시회 개최 등 사업화 지원</u> 7. <u>지역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u> 8. <u>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u> 9. <u>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시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상위 법령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이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관계 법령”은 삭제하고, 조문 순서를 이동함. ○ (검토안 제5조제1항) 원안 제6조를 이동하여 규정하고, 자구를 수정함. ○ (검토안 제5조제2항) 담당자 확인 결과, 원안 제5조 및 제6조의 취지는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연구기관 등에 사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시장은 정부 정책 및 지역경제 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사업과 사업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육성사업을 위탁할 때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에는 사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 지역산업 종사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 조합,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 제〉 〈삭 제〉	정함. - 또한, 원안 제5조제1항을 이동하여 규정하고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원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르면 되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업명, 목적, 사업기간, 협약당사자, 지원사항, 협약의 변경 또는 위반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 2.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 3.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등의 기술 지원 사업 4.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5.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6.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 7.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삭 제〉 〈삭 제〉	○ 검토안 제5조제1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〇〇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에 따르면 되므로 원안 제7조는 삭제함.

안건명 : ○○시 △△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시 △△구 기획실 (2018. 8. 9. 접수)

조례종류 : 자치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구 <u>착한 가격업소</u>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u>정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u>현지실사 및 평가 후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업소</u>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1 회를 원칙으로 한다.	○○시 △△구 <u>착한가격업소</u>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u>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①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 △△구(이하 “구”라 한다) 내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절차 등은 검토안 제3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 원안 제2조와 원안 제3조를 고려하여 검토안 제3조에서 원안 제3조를 구체화 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1회 이상 방문하여 <u>가격·품질·위생 등 적격여부를 조사</u> 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u>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할 것을 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가격·품질·위생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에는 현지실사와 평가를 한 후 ○○시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1회 이상 방문하여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제4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지정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 ○ 지정신청에 따라 지정할 것이므로 검토안 제2항의 예시와 같이 지정신청의 근거 조문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 원안 제7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검토안 제3항에서 정리함. ○ 지정이 취소되면 더 이상 착한가격업소가 아니므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므로 삭제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u>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u>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u>○○시 △△구(이하 “△△구”라 한다)</u>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u>주민들이</u>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u>노력하여야 한다.</u>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지판 교부 2. <u>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u> 〈신 설〉 3. <u>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u>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 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품질·위생 등을 점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u>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u>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u>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u>노력하여야 한다.</u> 제6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u>쓰레기봉투 지원</u> 3. <u>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u> 4. <u>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u>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 검토안 제3조제3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u>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u> ② <u>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u>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u>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u> 1. <u>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u> 2. <u>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정견 등 모니터링</u> 3. <u>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u> 4. <u>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u>	<u>제7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u>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u> 1. <u>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u> 2. <u>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u> 3. <u>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u> 4. <u>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u> ② <u>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u> 구청장이 정한다. 〈삭 제〉	○ 원안 제8조제1항과 원안 제9조를 검토안 제7조제1항에 통합하여 정리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요한 사항</u>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신 설〉</u>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 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u>	○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면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이 있다면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경과조치를 둘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안건명 : ○○군 교복 지원 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군 기획예산실 (2018. 8. 9. 접수)

조례종류 : 자치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군 <u>교복</u>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 구입비의 지원) ① ○○군수(이하 “군	○○군 <u>교복구입비</u>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군수(이하 “군수”라	○ (원안 제2조) 원안 제4조의 내용에 따라 지자체 확인 결과, 초등학교를 제외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입법취지라 하므로 이에 맞게 정의규정을 명확히 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u>교복 구입비</u>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u>○○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입학생은 당해년도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u> ③ <u>장애인 학생 및 저소득주민 대상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u>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u>교복구입비</u>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① <u>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u> 1. <u>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u> 2. <u>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u> 〈삭 제〉 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u>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	○ (원안 제1항) 원안 제2항과 제5조제2항의 내용을 옮겨 정리함. ○ (원안 제2항) 검토안 제4조제1항에 신설하였으므로 삭제함. ○ (원안 제3항) '장애인 학생'과 '저소득주민 대상'의 구체적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므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	<u>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인 학생</u>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삭 제〉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에 교복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	○ (원안 제2항)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검토안 제4조제1항에 옮겨 정리함. ○ (원안 제6조) 원안에서는 학교장에게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학교장은 군수의 지휘통제를 받는 하부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관할 읍장·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함. ○ (원안 제2항, 제3항)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을 검토안 제6조 및 제7조로 정리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여야 한다.	<u>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u>	
〈신 설〉	<u>③ 관할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u>	
<u>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u>	<u>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장·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u>	
〈신 설〉	<u>제7조(교복구입비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u>	
〈신 설〉	<u>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u>	
〈신 설〉	<u>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u>	○ (검토안 제3항)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 대상 학생이 연도 중에 추가로 신

(앞면)

교복 V 구입비 지원 신청서

☐ 신청 지원 대상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학교명	중 · 고등학교 학년				
주소					

☐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은 금액	원
------	---------------------------------	------------	---

「○○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고등학교 교복 V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
2. 교복 V 구매사실 증명서류(카드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 관할 읍·면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의 ○○군 전입 일자: 년 월 일 (확인자: 인)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V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교복 구입비 지원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군청, 학교 등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중·고등학교 교육기관의 입학사실정보 확인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V계좌번호, 예금주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 이용을 위하여 신청자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V표시)

※ 동의를 거부할 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서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성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관 계 : 지원 대상 학생의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 중·고등학교)

연번	신청 학생 인적사항				교복 구매 사실 확인	지원 적합 여부	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사)		비고
	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일부 지원	수혜 없음	
					○,×	적·합 부적합	금액 거제		

작성자 : ○○ 중·고등학교 ○○○ (인)

확인자 : ○○ 중·고등학교장 ○○○ (인)

○○군수 귀하

안건명 : ○○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군 기획감사실 (2018. 10. 16. 접수)

조례종류 : 자치조례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군 정착을 유도하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라 <u>귀농어·귀촌인의</u> 안정적인 ○○군 정착을 유도하고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어업인”이란 <u>전입일을</u> 기준으로 2년 이상 ○○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귀촌인의</u> 안정적인 ○○군 정착을 유도하고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어업인”이란 <u>전입신고일</u>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	○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하위법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삭제하고 자치조례임을 명확하게 함. ○ 영 제2조와 제3조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의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하고 있는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u>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자</u> 2. “귀촌인”이란 <u>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제2조 1호 외의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사람</u>	역에 <u>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 또는 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군에 이주한 후 전입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u> 2. “귀촌인”이란 <u>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제1호 외의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u>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3조(지원)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이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농지, 축사, 어구 등 매입 자금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 2.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귀농어·귀촌인 지원센터	<u>제13조(귀농어·귀촌인, 귀농단체 지원사업)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 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1.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농지, 축사, 어구 등 매입 자금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u> <u>2. 교육훈련 및 귀농귀촌 지원센터</u>	<u>제3조(귀농어업인·귀촌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이하 “귀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귀농어업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u> <u>1. 귀농어 후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 사업</u> <u>2.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u>	○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변경함. ○ 특정 단체명이나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 법 제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참조하여 원안을 포괄적인 표현으로 정리함. ○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원안 제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3. 귀농어·귀촌인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 4.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구입 용자지원 등 5. 귀농어업인 창업 및 청년농산업 창업 6. 재배기술 습득, 현장실습교육, 멘토링 등 사업비 지원 및 기술·경영 컨설팅 7.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및 주민 화합에 필요한 사업 및 지역주민 역량 강화 사업 8.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귀농어·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지원 9.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활동 및 농촌현장 투어 지원 10. 귀농학교 육성 및 교육비 지원 11. 그 밖에 귀농어·귀촌인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u>터 운영 지원</u> 3. <u>자연재해에 대한 지원</u> 4. <u>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구입 용자지원</u> 5. <u>농어업 창업 및 청년농산업 창업</u> 6. <u>재배기술 습득, 현장실습교육, 멘토링 등 사업비 및 기술·경영 컨설팅</u> 7. <u>귀농어업인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및 주민 화합에 필요한 사업 및 지역주민 역량 강화 지원</u> 8. <u>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귀농·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지원</u> 9. <u>도시민 초청 농촌체험활동 및 농촌현장 투어 지원</u> 10. <u>○○생태귀농학교, 스스로집짓기학교 육성 및 교육비 지원</u> 11. <u>○○군귀농인협의회 및 ○○생태귀농학교 동문회 활성화 지원</u>	3. <u>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 활성화 사업</u> 4. <u>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등 지원</u> 5. <u>귀농어·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어·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의 행사</u> 6. <u>주택의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u> 7. <u>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 매입 또는 임차</u> 8. <u>귀농어·귀촌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u> 9. <u>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13조의 ‘귀농·귀촌’ 등은 ‘귀농어·귀촌’ 등의 오타라고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함. 이하 같음.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4조(지원 신청) 귀농어·귀촌인, 귀농어·귀촌 관련 단체 등이 이 조례	12. <u>귀농세대에 대한 영농정착금 지원 (2018.12.31.이전 전입자 대상, 1년차는 2019년까지 2~3년차는 2021년까지 지원)</u> 13. <u>귀농세대에 대한 영농자재비 지원(2018.12.31.이전 전입자 대상, 2019년까지 지원)</u> 14. <u>귀농세대에 대한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2019.1.1.이후 전입자 대상)</u> 15. <u>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② <u>군수는 귀농인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u> 〈신 설〉	〈삭 제〉 <u>제4조(귀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신청) ① 귀농어업인등 및 귀농어·</u>	○ 원안 제12호 및 제13호의 경우, 이 조례안이 공포·시행(2019년 1월 1일 예정)시 폐지될 사업이나, 종전 사업 실시에 따른 대상자 및 지원 시기를 명확히 하고 싶다는 담당자 의견에 따라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규정함. ○ 검토안 제8호에 따라 지원가능하므로 여기에서는 삭제함. ○ 지원 신청에 따라 지원할 것이므로 검토안 제4조의 예시와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귀촌 관련 단체·기관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귀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신청서를 읍장·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장·면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 <u>1. 주민등록표 초본</u> <u>2. 가족관계증명서</u>	같이 지원 신청의 근거 조문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제5조(지원 사업의 결정)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른 ○○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	<u>제14조(지원사업의 결정) 제13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군 귀농귀촌 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u>	<u>제5조(귀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여부의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군 귀농어·귀촌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다고</u>	○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원안 제14조의 “○○군 귀농귀촌 정책심의회”는 검토안 제8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오기라고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함.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감독 등)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통지, 교부 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u>지원받은 후 아래의 거주기간을 거주하지 않고 전출할 경우</u>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하여야 한다.</u>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u>예외로 한다.</u> 1. 영농정착금을 지원 받은 후 3년 내 전출할 경우 2. 귀농 창업육성 지원사업 지원	<u>인정하는 경우에는</u>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귀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군 귀농어·귀촌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 〈삭 제〉	○ 원안 제15조제1호는 원안 제13조제12호에서 규정한 영농정착금 지원에 대한 지원취소 및 지원금 회수 규정으로, - 원안 제13조제12호는 이 조례 시행 후 폐지될 사업이나, 종전 사업 실시에 따른 대상자 및 지원 시기를 명확히 하고 싶다는 담당자 의견에 따라 검토안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안 제1호 역시 검토안 부칙 제4조제2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받은 후 5년 내 <u>전출</u> 할 경우 3. <u>귀농어업인·귀촌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u> 4. <u>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u> 5. <u>귀농어업인·귀촌인이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u> 6. <u>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u> 7. <u>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존속 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u> 제12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① <u>군수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u>	1. 제3조제4호의 지원을 받은 후 5년 내 <u>전출</u>할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2.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기관이 지원받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삭 제〉 제7조(귀농어·귀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u>군수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어·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u>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재기재한 부분은 제외하여 정리함. 이하 같음. ○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의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와 별개의 지원센터라 하므로 이에 따라 검

현 행	개 정 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안내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u>귀농귀촌</u>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u>귀농어업인·귀촌인</u>에 대한 자문, <u>정보제공</u>, <u>고충처리</u>, <u>애로사항 해결</u> 등 2. <u>귀농어업인·귀촌인</u> 유치를 위한 <u>종합자료</u> 구축 3. <u>선배 귀농어업인·지역작목반·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u> 및 협력을 위한 <u>멘토링 연결</u> 4. <u>귀농어업인·귀촌인</u> 지원정책과 관련한 <u>법령</u> 또는 <u>제도개선 사항 건의</u> 5. 그 밖에 <u>귀농어업인·귀촌인</u>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u>사항 지원</u> ② <u>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u>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u>다음 각 호의 업무</u>를 수행하는 <u>귀농어·귀촌</u>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u>귀농어업인등</u>에 대한 자문, <u>정보 제공</u>, <u>고충 처리</u>, <u>애로 사항의 해결</u> 2. <u>귀농어업인등의</u> 유치를 위한 <u>종합적인 자료</u> 구축 3. <u>기존 귀농어업인, 지역 작목반, 선도 농어가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u> 및 협력을 위한 <u>상담·지도</u> 4. <u>귀농어업인등</u> 지원정책과 관련한 <u>법령 개선</u> 또는 <u>제도개선 사항 발굴</u> 5. 그 밖에 <u>귀농어업인등의</u>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u>사항의 지원</u> 〈삭 제〉	토함. ○ 귀농어·귀촌 지원센터가 군에서 직접 설치·운영되는 이상, 원안 제2항은 당연한 내용이므로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3조(귀농어·귀촌 정책위원회 설치) ○○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귀농어·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귀농어귀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 2. 귀농어업인·귀촌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의 개발·기획의 조정 3. 귀농어업인·귀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4.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사업의 심사·결정 및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5.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 협의 6. 귀농어업인·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제8조(○○군 귀농어·귀촌 정책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① 귀농어업인등의 유치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 귀농어·귀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어업인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의 개발·기획의 조정 2. 제3조에 따른 귀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취소 3. 귀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 4. 귀농어업인등의 고충 처리 5. 귀농어·귀촌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귀농어업인등의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5조에서 규정하는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와는 별도로 귀농어·귀촌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귀농어·귀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하는바, - 원안 제4조제1호의 경우 법 제 6조제3항에 따라 시·군·구 계획은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법과 중복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1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을 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7.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u> <u>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u> <u>③ 위원은 귀농·귀촌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촉한다.</u> <u>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u> <u>2.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농업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u> <u>3.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u>	<u>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u> <u>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 <u>1. 농업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u> <u>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u> <u>가.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u> <u>나.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u> <u>다. 농어업 분야 또는 귀농인 유치·지원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u>	○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민간위원의 선임권자를 위원장으로 둔 취지는 민간위원 위촉권자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특별히 위원장을 민간위원의 선임권자로 둘 필요성은 없다고 하였으므로,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위원회의 일반적인 규정방식에 따라 위촉권자를 군수로 변경함.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 <u>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신설〉 〈신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② <u>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u>	○ 위촉위원의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 필요. ○ 조나 항은 원칙적으로 한 문장으로 구성하되, 규정할 내용이 길고 복잡할 때에는 항으로 나누어 규정함.(「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8판)」101쪽 참고) ○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은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검토안 제2항의 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9쪽 참조) ○ 위원회에 지원 사업 선정 심의권이 있어 위원회에 중립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위원의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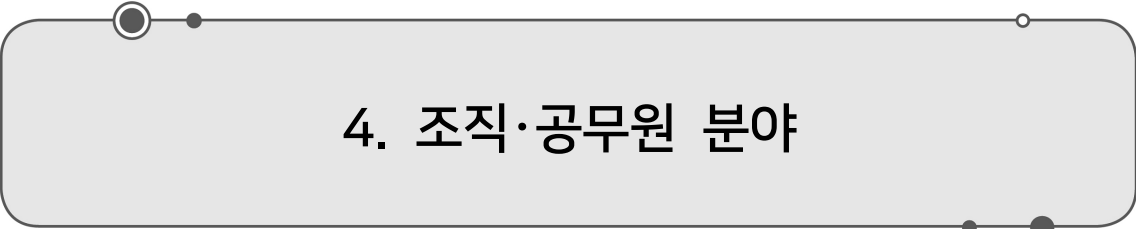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u> <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u> <u>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u> <u>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u> <u>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u> <u>자인 경우</u> <u>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u> <u>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u>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u> <u>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u> <u>는 감정을 한 경우</u> <u>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u> <u>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u> <u>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u>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u> <u>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u> <u>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u> <u>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u> <u>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u> <u>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u> <u>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u>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u> <u>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u>	척·기피·회피 규정을 두는 것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제7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u>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u>사유로</u>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u>제8조(위원회 회의)</u>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u>요구가 있을 때</u>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u>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u> <u>제12조(위원장의 직무)</u>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u>사유로</u>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u>제13조(위원회의 운영)</u>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u>요구하는 경우에</u>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분수의 출석으로 <u>개의하고</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제10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귀농귀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u> 제11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반수 출석으로 <u>개의(開議)하고</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필요한 경우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u>군수가 지명한다.</u>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u>사항</u>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귀농귀촌업무 담당주사”는 법령 및 조례 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도록 수정함.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농어업인등 창업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 비용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귀농어세대등에 대한 영농어 정	○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2019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라 함으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함. ○ 귀농어업인 창업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시행일과 구분하여 정리함. ○ 원안 제13조제12호 및 제13

현 행	개 정 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착금 및 영농어 자재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군수는 부칙 제3조에 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영농어 정착금 및 영농어 자재비 지원을 신 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농어 정착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군 외의 지역 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 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의 경우 이 조례 시행에 따 라 폐지 될 사업이나 담당자 의견에 따라 부칙 제4조 경과 규정으로 이동하여 규정하였 는바, -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은 세부적인 사업 내용으 로서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보 다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따라 문구를 정리함. ○ 원안 제15조제1호는 원안 제1 3조제12호에서 규정한 영농 어 정착금 지원에 대한 지원취 소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규 정으로 - 원안 제13조제12호를 검토안 부칙 제4조제1항으로 이동하 여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안 제15조제1호 역시 검토 안 부칙 제4조제2항으로 이동 하여 규정함.



4. 조직·공무원 분야

안건명 : ○○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군 기획예산담당관 (2018. 5. 28. 접수)

조례종류 : 위임조례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u>제1장 총칙</u>	○○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u>〈삭 제〉</u>	○ 법령 본칙의 조문 수가 많으면 (통상 조문 수가 30조 이상인 경우)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으나(『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312쪽 참조), 이 조례안은 검토안을 기준으로 조문 수가 20조밖에 되지 않아 ‘장’을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 일반적인 위임조례 형식으로 수정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군 공무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하는 때에는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 2와 같이 한다.	<u>의 복무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u>○○군 공무원</u>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u>○○군수</u> (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u>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u> ② <u>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에 따른다.</u> 〈신설〉	<u>시행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u>○○군 공무원</u>(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u>○○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u> 제3조(선서의 방식) ① <u>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u> ② <u>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u>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참고하여 별표 2의 내용을 본칙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 <u>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u>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조문 순서를 참고하여 선서→책임 완수→근무기강의 확립→친절·공정한 업무 처리→비밀 업무 순서로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함. ○ (원안 제5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행동기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중	제7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u>공사(公私)</u>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및 「○○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공직자 행동규범”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강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검토안 제6조 및 별표 2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안 제3항) 「지방공무원법」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몰래 흘리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	<u>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u> <u>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후단 신설></u>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	제8조(비밀 엄수) <u>공무원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u>사용해서는 안 된다.</u> <u>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u>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u>주민의</u>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1조의2제1항을 재기재한 것으로 삭제함. ○ 「국가공무원법」 제60조와 달리 「지방공무원법」 제52조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는 경우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서로 뜻을 맞추고 마음과 힘을 모아 정답고 명량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 숙직, 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그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사항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처리,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u>당직 및 비상근무(상황근무 등을 포함한다)</u>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u>당직 및 비상근무에</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당직근무)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u>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u>,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u>당직근무를 한</u>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u>당직근무에</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함) 제2조의6에서는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근무와 관련하여 정할 사항이 있다면 조례가 아닌 규칙 또는 훈령의 형식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에 시간을 써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0조(겸임근무)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래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8조(겸임)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겸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을 약칭함.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 공무원의 복무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군수는 파견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외공무원 복무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삭 제〉	○ (원안 제3항)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재외공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또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더라도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 없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남아 있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임·파면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그 밖에 공무원의 제복	<u>또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u> 이 경우 군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의 제복 착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에 따른다.	제12조(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①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	고, 담당자 확인 결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정책적 필요성이 없으나 해당 규정의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조문을 수정함.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착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4조 <삭 제> 제15조 <삭 제> 제16조 <삭 제> 제17조 <삭 제> 제3장 휴가 등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제2장 휴가 등	<u>기관의 장</u> 및 “<u>각급 기관의 장</u>”은 “<u>군수</u>”로 본다. <삭 제>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개정 2015. 11. 30)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 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5와 같이 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7일을 초과하여 연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나누어서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u>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u>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u>아니하도록 공무원 및 그 배우자 부모의 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u>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u>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u>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_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u>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u>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별표 4에서 규정하지 않고 본칙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함. ○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한다. ④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무원이 제19조의 연가 일수에 따른 연가를 하지 못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군수는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 외의 목적으로 <u>국외여행</u>을 하는 경우 2. 병가,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 및 일반 대학교·대학원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4. 친족의 <u>경조사</u>인 경우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1. 공무 외의 목적으로 <u>여행</u>을 하는 경우 2.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또는 대학교·대학원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4. 친족의 <u>경조사</u>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1.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4. 친족의 경조사의 경우 5.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연가일수 공제) ① <u>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u>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 15일 이상은 1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u>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u>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휴직(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u>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u>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② 휴직(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u>계산식</u>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	○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 12(월) × 해당 연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	환산하여 계산하되, <u>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u> 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 12(개월) × 해당 연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u>제1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u>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u>공제하지 아니한다.</u> 제15조(병가) ① <u>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u>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여 계산하되, <u>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u> <table><tr><td>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td><td>해당 연도의 연가일수</td></tr><tr><td>12(개월)</td><td></td></tr></table>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u>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u>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u>빼지 않는다.</u> 제17조(병가) ① <u>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u>	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	12(개월)		○ 자구를 수정함.
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						
12(개월)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한다.	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석할 때 10.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월 1회의 무급 생리휴가와 임신부 정기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	제16조(특별휴가) ① <u>공무원은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u> 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이내(2회 이내 분할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이내(4회 이내 분할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이	제18조(특별휴가) ① <u>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u> 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이내 2.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이내 3. 30년 이상: 20일 이내	○ (원안 제2항) 검토안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나누어 규정함.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u>내(4회 이내 분할사용 가능)</u> 〈신 설〉 〈신 설〉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월 1회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총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자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횟수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2회 이내 2. 20년 이상 30년 미만: 4회 이내 3. 30년 이상: 4회 이내 ④ 장기재직휴가는 제2항 각 호의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 시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삭 제〉 ⑥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필요한 경우에는	○ (원안 제3항) 자구를 수정함. ○ (원안 제4항) 영 제7조의3제6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원안의 “모성보호휴가”를 도입하려는 취지라면, 모성보호휴가는 모성보호시간과 적용대상과 요건이 같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까지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	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당일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연간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아 동일한 취지의 제도로 보여 지는바, 이는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법제처 의견제시 17-0145 참조) ○ (원안 제5항) 자구를 수정함. ○ (원안 제6항 및 제7항) 근거법령을 인용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⑩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이내(2회 이내 분할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이내(4회 이내 분할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이내(4회 이내 분할사용 가능) ⑪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학습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받을 수 있다. ⑨ 군수는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받을 수 있다. ⑩ 군수는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상담 또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학교의 안내장, 가정통신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⑫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군수는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 <삭 제> 제25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휴가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제19조,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8조 <삭 제> 제29조 <삭 제> 제5장 정치운동 제30조 <삭 제> 제31조 <삭 제>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삭 제>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선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u>제3장 보칙</u> <u>제18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u>〈삭 제〉</u> <u>제20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다면, 시행규칙의 제정을 위하여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음. ○ 종전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현행	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24조제10항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u>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u>	<u>규정(□□도○○군조례 제2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8조제2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u>	

[별표 1]

선서문(제3조제1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군수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기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공직자 행동규범(제6조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1.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2.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3.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4.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5.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6. 민원은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처리한다. 7.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8.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9.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1. 시간을 엄수한다. 2.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3. 근검절약한다. 4. 남에게 겸손하게 대한다. 5.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6.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7. 직장 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8.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9. 책을 읽고 인격을 도야하는 데 힘쓴다. 10.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2조 관련)

1. 민간경력 인정 대상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 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하지 않음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8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4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카산할** 수 있다.

안건명 : ○○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요청기관(접수일) : ○○군 기획감사실 (2018. 7. 27. 접수)

조례종류 : 위임조례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 5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책실명 공개과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 일반적인 위임조례 형식으로 수정함. ○ (원안 제2조제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함) 제2조제14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기재할 필요성이 없음. ○ (원안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검토안에 서 언급되지 않으므로 삭제함.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중 외부에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u>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 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정책을 세우고, 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 사항 2. 대규모의 국책공사 및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 협상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6. 그 밖에 주민 공개 요청 사업 등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정책참여자의 범위는 정책 입안자, 검토 및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 조문순서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기준→대상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대상 공개→평가 순이 되도록 조문을 수정함. ○ 근거 법령을 명시함. ○ (원안 제3조제2항) 검토안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함.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 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의 홍보·교육·평가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삭 제〉	○ 영 제63조의2를 재기제한 것으로 삭제함.
제9조(공개과제 대상사업의 선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정책실명제 선정기준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을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원안 제9조는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와 사업부서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님. 필요하다면 훈령 등의 형식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 이하에서는 담당자의 설명과 지침을 참고하여 조문을 수정함. ○ (검토안 제1항) 원안 제9조제3항을 이동하여 규정함. ○ (검토안 제2항) 지침에 따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내부적으로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u>④ 공개과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5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u> <u>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u>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u> ○○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u>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u> 2. <u>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u> 3. <u>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삭 제〉 〈삭 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함(지침 4쪽). ○ 위원회의 일반적인 규정 순서에 따라 조문을 수정함. [위원회 규정 순서] ①위원회의 설치→ ②기능→ ③구성→ ④위원의 임기→ ⑤위원의 신분→ ⑥위원장의 직무→ ⑦위원회 존속기한→ ⑧위원회의 운영→ ⑨위원회의 사무기구 또는 간사→ ⑩위원 수당→ ⑪위원회 운영 세칙 ○ (원안 제5조제1항) 원안 제6조의 내용을 검토안 제4조로 이동하여 규정함. - 담당자 확인 결과, 원안 제6조제2호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안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별도로 심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함. ○ (원안 제5조제2항) 검토안 제8조제2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 (원안 제5조제3항) 검토안 제8조제3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삭 제〉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검토안 제4조로 이동하여 규정함. ○ 일반적인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문을 수정함.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있다. 4. 위원 중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신 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u>미리 지명한 위원</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하므로 검토안 제6조제2항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검토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원안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이동하여 규정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회의가 소집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함. ○ 원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제3항을 이동하여 규정함.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개과제 대상사업의 공개)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1. 진행 중인 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등록 2. 완료된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등록 3.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부서의 완료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등록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삭 제〉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1. 대상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2.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	○ 위원 수당 지급은 「○○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 ○ 담당자의 설명과 지침(7쪽)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고, - 원안 제11조의 내용은 지침에 따르면 공개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현행화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안 제2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되,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는 기간을 검토안과 같이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신 설〉 제11조(정책이력관리) ① 사업부서는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변경된 사업내역서 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공표된 공개과제 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u>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 <u>제10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u> 〈삭 제〉 제11조(평가) ① <u>군수는</u>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u> 부 칙	○ 원안 제11조제2항을 이동하여 규정함. ○ 검토안 제9조제2항 및 제10조로 이동하여 규정함. ○ 자구를 수정함.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정책실명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 현재 「○○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정책실명제 관련 제도를 운영 중임. ○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공개과제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	② 정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

〈기재항목〉

-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8-1, 2018-2)합니다.
- ② 정 책 명 : 사업명을 기재적입니다.
-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적입니다.
-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적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명세서공개과제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 당 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00.00.00	○○군수 실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	
○ 내용	'00.00.00	실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	

〈기재항목〉

-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정책실명 공개과제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명**을 **크대로** 기재합니다.
 -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사**적입니다.
 -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입니다.
 -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을 **기재**합니다.
 - ⑤ 담당자 : **현**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합니다.
 - ⑥ 선정기준 : ~~군정주요현안사업/ 10억이상 사업/ 1억 이상의 용역/ 국제교류 및 통상 / 조례제개정사항/ 기타 중 택일~~ 제2조 각 호 중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을 **기재**합니다.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실명 공개과제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그 밖의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일시 및 관련자**는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을 **기재**합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공개과제사업 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8-01	담당부서 작성자	(부서명 / 담당명) (이름/사무실 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2000.0.00 ~ 2000.0.00 ○ 총사업비 : 000백만원 ○ 주요내용 -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04.1.5 : □□도에서 '○○해양박람회' 유치추진 건의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4.12.20 : '2012○○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계획' 수립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8.3.14 : '2012○○세계박람회 자원특별법 제정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8.3.31 : 2012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인가(국토부) 관련자 :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과장, 국장 송00, 실장 남00 ○ 09.11.12 : 박람회 착공식 관련자 : □□남도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남00, 실장 최00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000건설사 부장 김00, 부장 최00, 본부장 이00 ○○군으로 변경하여 규정하는 것을 권고함.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할 수 있습니다.으로 등록 가능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발행처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7-1동)

전 화 : 044)200-6761

F A X : 044)200-6972

발행일 : 2018년 12월
